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상담사례 보고대회

발달장애인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 피해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3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

2020.12.11.(금) 14:00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 상담사례 보고대회

발달장애인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 피해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3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

2020.12.11.(금) 14:00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대연회장

 **YouTube 생중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채널)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0년 상담사례보고대회

인 사 말

양영희 관장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9
------------------------------	---

축 사

방재을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11
권달주 회장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3
은중군 관장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

활동보고

2020년 상담 현황 보고서	19
2020년 경기북부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 보고서	31
2020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 사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서	43

발 표

발달장애인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피해 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3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 박현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증괄팀장)	67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례보고 - 강성구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	85

사례증언

사례증언	91
------------	----

발 표

부족한 지원체계, 그 빈곳을 채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과정에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95
---	----

판 결 문	105
-------------	-----

일 정 표

시 간		내 용
부터	까지	
13:30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14:20	○ 개회식 ○ 내빈소개 ○ 인사말 및 축사
1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		
14:20	14:50	○ 보고1. 2020년 상담 현황 보고서 - 발표자 : 이나영 (권리옹호팀) ○ 보고2. 2020년 경기북부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 보고서 - 발표자 : 강지은 (교육정책팀) ○ 보고3. 2020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서 - 발표자 : 백주현 (교육정책팀장)
14:50	15:00	○ 휴식시간
2부. 발달장애인의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15:00	16:00	○ 발표1. 발달장애인의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피해 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3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 박현희 (총괄팀장) ○ 발표2. 과세처분무효소송 사례보고 - 강성구 (법률사무소 공청 변호사) ○ 사례증언 ○ 발표3. 부족한 지원체계, 그 빈곳을 채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과정에서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6:30	-	○ 폐회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양영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2020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보고대회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걱정과 침체기의 한 해를 보내고, 장애인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보면서 재난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학대와 차별로 인한 피해장애인은 지금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의 회복지원뿐만 아니라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조사와 상담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이념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과 지역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장기간의 지원과 많은 사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률지원 자립생활 지원 행정지원 등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1년 동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활동하면서 피해장애인에게 주거지원에 협조하여 주신 자립생활센터 소장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사말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한 해였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방면으로 지원해주신 권달주회장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균 관장님에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박현희 총괄팀장님, 백주현 팀장님, 이나영님, 고은영님, 유미혜님, 채국현님, 전주환님, 강지은님, 최형월님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년 12월 11일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장

양 영 희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방재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울입니다.

2020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 보고대회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양영희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님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상담사례 보고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보고대회가 장애인 차별과 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사회는 선천적 장애 못지않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예기치 못하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은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와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의 이념을 현실화시키는 책임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학대를 없애나갈 때,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는 263만1천719명이며, 경기도 등록장애인 인구는 56만 7천606명에 이릅니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21.56%가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70만 명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복지’를 중요한 도정가치 중 하나로 삼아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의 선도적 정책이 대한민국의 모델과 표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도 경기도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축 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장애인 학대 예방과 차별금지 등 권익 보호,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은 세상, 장애인이 살기 좋은 사회가 비장애인도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관심이 변화를 만듭니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차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장애인 학대와 차별이 없는 경기도,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자립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기도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과 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권 달 주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권달주입니다.

2020년 경기북부장래인옹호기관 사례보고대회를 준비해준 양영희 기관장님과 팀장님 및 종사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을 많이 변화 시켜줍니다. 보통의 삶은 온데간데없고 장애인과 약자들의 고립과 시설의 코호트 격리정책으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나날들입니다.

인권은 누구나의 권리이고 더하여 복지는 보편타당한 모두의 권리입니다.

이 권리에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지극히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데는 어떠한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현실은 최소한의 권리에서마저도 배제된 채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거나 혹은 하루하루가 힘겨운 혈투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타의에 의해 지역사회와 분리 되어지거나 차별적 범망에 걸려 동등한 인간의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없는 수 많은 장애인들이 그 예입니다.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소외됨 없이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가기까지는 자립생활 정책 지원 방향 또한 지속적인 연구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며 탈시설 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축소 및 탈시설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 지원 등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축 사

오늘 사례들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즉시대응과 맞춤형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지원은 물론 권리옹호 구축을 통한 장애인 인권향상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방안 마련으로 장애인 차별과 학대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장애인의 배제와 차별과 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중요성을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외빈 및 온라인을 통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하여

은 종 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관장입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년 상담사례보고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지역의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양영희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19로 비대면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최근 우리 삶은 많은 부분 변화와 함께 적응이 필요해 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 역시 변화된 환경의 한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경기북부지역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2019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3,658건보다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만큼 우리사회의 장애인 인권침해가 만연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떨까요? 지난해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된 인권침해는 전년도와 비교해 148.4%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도의 장애 인구수가 많아서 벌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기관이 새롭게 설치되어 일어난 현상만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장애인당사자들이 소통할 곳이 없었고, 또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알지 못했던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직면해 있는 장애인의 현실이고 삶입니다.

축 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해장애인들의 촘촘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보고대회에서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도 미흡한 제도의 개선과 지역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대회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역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회에 참석하고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활동보고

보고자료 1

2020년 상담 현황 보고서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I. 2020년 상담분석 개요

1. 법적근거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 장애인학대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그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 목 적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상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3. 기 간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0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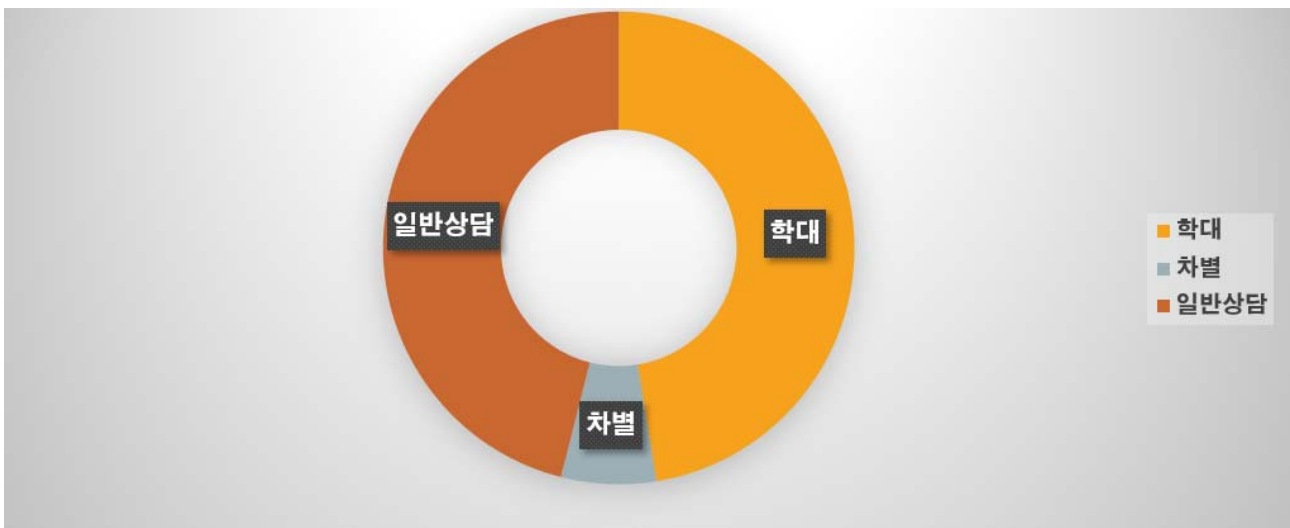
4. 대 상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상담.

[신고접수]

(단위: 건, %)

학대		차별		일반상담		계	
102	47	14	7	99	46	215	100



2020년 9월말 기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전체 신고접수는 총 215건으로 장애인학대 의심사례가 102건으로 47%, 일반상담이 99건으로 46%를 차지하였으며 차별과 관련된 상담이 14건으로 7%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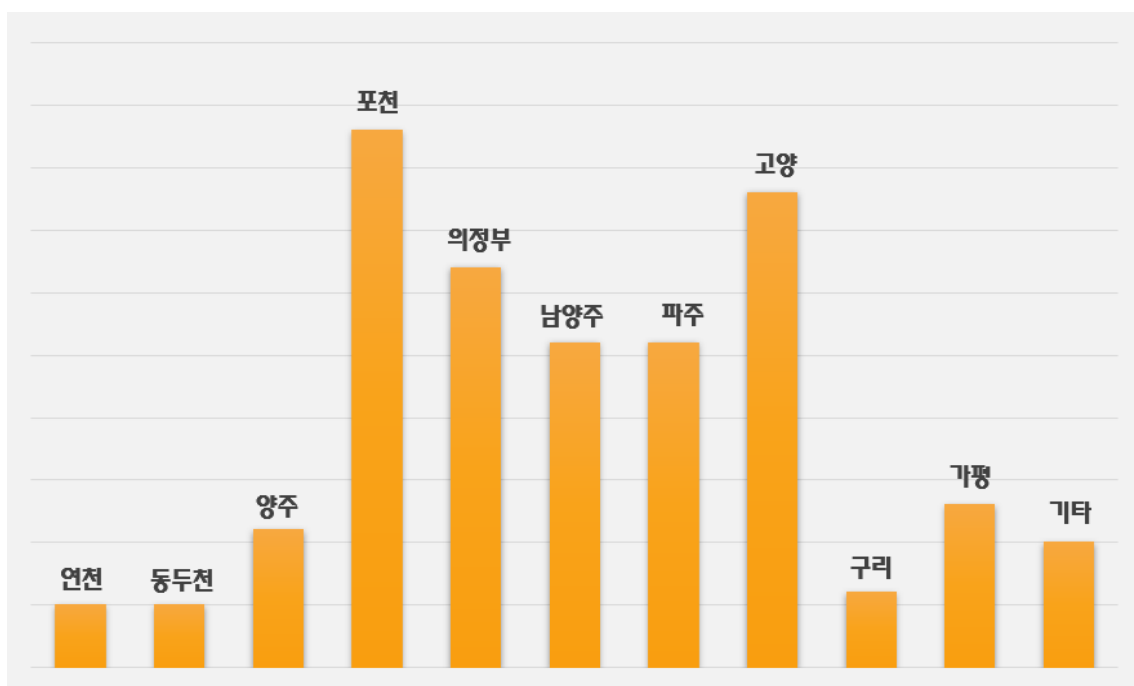
2019년 9월말 기준 264건 접수된 사례와 비교하면 2020년 9월말 기준 접수 사례는 215건으로 작년 대비 19% 감소된 것을 확인할수 있다.

학대사례는 2019년 9월말 기준 117건으로 13% 감소되었으며 일반상담은 94건으로 5% 증가하였고 차별 상담은 53건으로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신고접수]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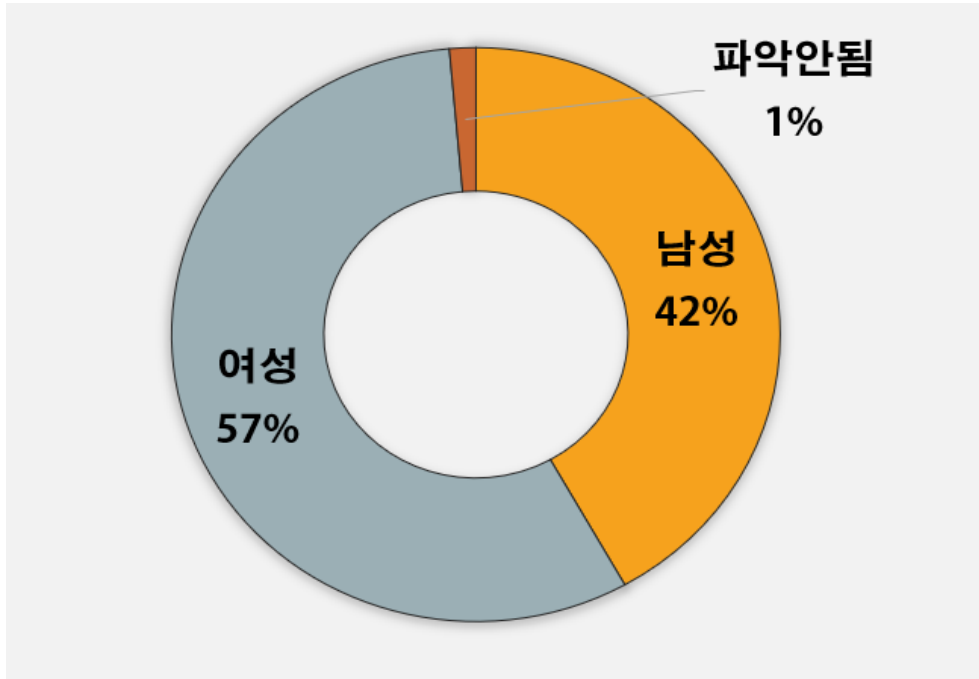
구분	건	계
연천	5	2
동두천	5	2
양주	11	5
포천	43	20
의정부	32	15
남양주	26	12
파주	26	12
고양	38	18
구리	6	3
가평	13	6
기타	10	5
계	215	100



2020년 9월말 기준 상담 접수된 지역을 살펴보면 포천이 43건, 고양이가 38건, 의정부가 32건으로 상담이 많이 접수되었다.

기타의 경우 일반상담으로 당사자가 지역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거나 그 외 지역에 해당된다.

[성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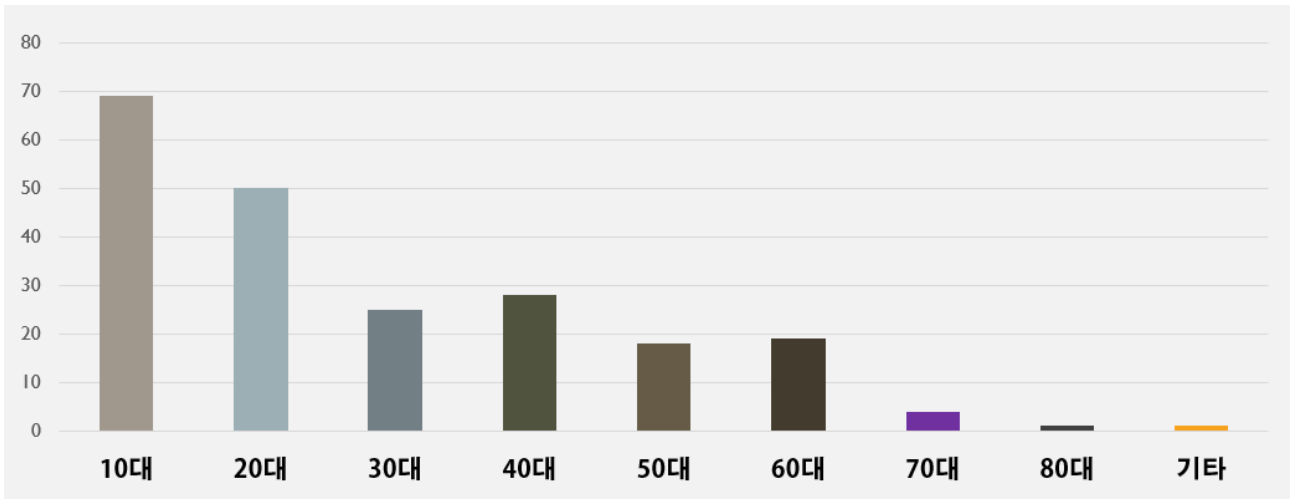


2020년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9월말 상담 접수 215건중 여성은 57%(122명), 남성은 42%(90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15% 높게 나타났으며, 학대와 관련된 상담도 여성이 63%(64명), 남성이 37%(38명)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26% 높게 나타났다.

(단위: 명, %)

남성		여성		파악안됨		계	
90	42	122	57	3	1	215	100

[연령대]



(단위: 명,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기타	계
69	50	25	28	18	19	4	1	1	215
32	23	12	13	8	9	2	0.5	0.5	100

상담 접수 연령대는 10대가 32%(6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대 23%(50명), 40대 13%(28명), 30대 12%(25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19세 이하의 경우 정서적 학대에 대한 상담이 많았으며 29세 이하의 경우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와 관련된 상담이 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0~80대의 경우는 일반상담에서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상담이 주로 진행되었다.

[신고접수 방법]

(단위: 건, %)

전화	온라인	문자	팩스	우편	내방	기타 (인지포함)	계
155	13	-	10	-	14	23	215
71	6	-	5	-	7	11	100

신고는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고, 문자·팩스·우편을 통한 신고,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내방신고 등 상담원이 사례를 알게 되어 접수하는 인지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다.

[신고접수 경로]

(단위: 건, %)

신고	인지	연계	연계(경찰통보)	이관	계
173	21	4	11	6	215
80	10	2	5	3	100

접수 경로는 신고가 80%(173건) 차지하였고 그 외 상담원의 인지를 통한 상담이 10%(21건)로 차지하였으며 경찰통보를 통한 연계가5%(11건)을 차지하였다.

연계는 유관기관을 통한 신고접수이며 이관은 피해장애인의 주소 확인결과 경기북부의 거주하여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이관된 것을 나타낸다.

[장애유형별]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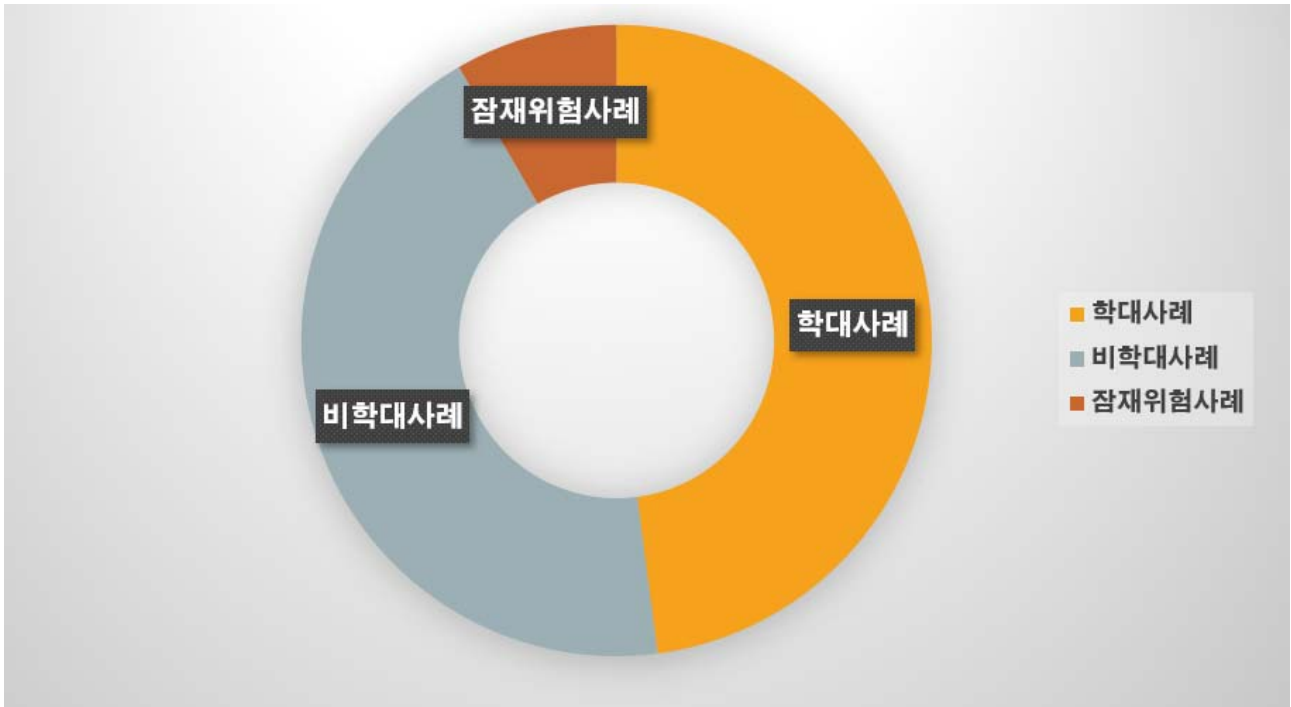
장애유형	건수	비율
지체장애	31	14
뇌병변장애	10	5
시각장애	6	3
청각장애	4	2
언어장애	1	-
지적장애	113	53
자폐성장애	12	6
정신장애	10	5
신장장애	1	-
심장장애	-	-
호흡기장애	-	-
간장애	-	-
안면장애	1	-
장루·요루장애	-	-
뇌전증장애	2	1
미등록	24	11
계	215	100

※중복 장애 미포함

장애 유형별 상담 접수는 지적장애가 53%(113건)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 14%(31건), 다음으로 미등록이 11%(24건), 자폐성장애가 6%(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라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 장애인인 경우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학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미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 119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학대신고 사례판정]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례가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례판정 절차를 통해 판단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회의에서 장애인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비학대사례로 판정하며, 사례회의에서 사례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학대판정위원회를 거쳐 학대여부를 판정한다.

장애인학대사례란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한다. 잠재위험사례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명확히 학대로 판정할 수 없는 사례로 비학대사례이지만 향후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학대 예방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비학대사례는 학대조사 결과 장애인학대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례로 구분한다.

2020년 9월말 학대의심신고 96건중 46건이 학대사례로 판정되었으며 비학대사례가 42건, 잠재위험사례가 8건으로 판정되었다.

(단위: 건, %)

학대사례		비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계	
46	48	42	44	8	8	96	100

[사례판정 학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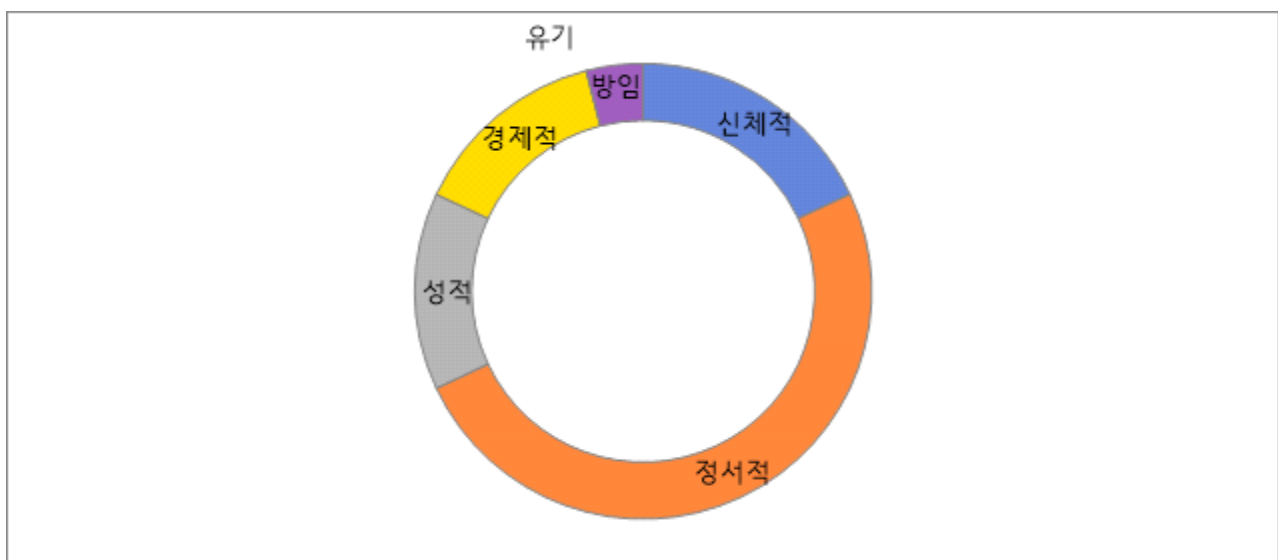
(단위: 건(명), %)

학대유형	상담건(명)	비율(%)
신체적학대	9	18
정서적학대	25	50
성적학대	7	14
경제적착취 (노동력착취 포함)	7	14
유기	-	-
방임	2	4
계	50	100

※중복 학대 포함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 정서적학대가 50%(25건), 신체적학대 18%(9건), 성적학대 14%(7건), 경제적착취가 14%(7건), 방임이 4%(2건) 순으로 판정이 되었다.

학대사례로 판정된 사례중 피해장애인의 거주유형의 경우 재가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의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가 되었으며, 학대행위자 유형에는 가족 및 친인척, 신고의무자인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 상담이 주로 진행되었다.



[현장 조사 방법]

(단위: 건)

구분	방문	내방	전화	기타	계
학대의심사례	96	11	90	19	216
일반(차별)	3	-	22	-	25
계	99	11	112	19	241

상담 조사는 피해자, 행위자, 관련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학대의심사례 조사시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피해장애인 쉼터 등으로 연계하거나 의료기관 인도를 통해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다.

상담조사 방법으로는 방문, 내방, 전화, 기타로 진행되며 상담조사시 조사 대상자의 연락불가, 의사소통불가, 사망, 수감, 조사거부, 경찰수사중, 타기관조사중, 부재중으로 조사가 불가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지원유형]

(단위: 건, %)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교육	상담	중재	기타	계
16	10	118	80	93	1	380	18	762	1,478
1	1	8	5	6	0	26	1	52	100

2020년 9월말 접수 기준 상담 및 지원은 총 1,478회의 피해자지원이 진행되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의 영역으로 나눠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의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지원은 학대로 인하여 발생한 질환 등의 치료와 피해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통원치료나 검진 등을 말한다. 심리지원은 심리·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심리진단,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지원은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지원으로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신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법지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사법절차, 법률상담이 해당된다.

복지지원은 장애인등록,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 활동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말한다. 그 외 피해장애인과 학대행위자 간 중개, 교육연계, 진정, 행정처분 요구, 피해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이뤄지는 상담 등을 말한다.

[일반사례 신고접수]

(단위: 건, %)

차별											일반			계
교 용	교 육	재 화/ 용 역 일 반	보 험/ 금 융	시 설 물 접 근	이 동/ 교 통 수 단	정 보 접 근/ 의 사 소 통	문 화/ 예 술/ 체 육	사 법/ 행 정	참 정 권	기 타	정 보 문 의	불 만/ 민 원	기 타	계
7	-	-	-	1	-	1	-	1	-	3	93	-	6	112
6	-	-	-	1	-	1	-	1	-	3	83	-	5	100

일반상담 및 차별상담의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사례 정보문의 사례가 주로 접수되었으며 차별에서는 교용, 시설물접근, 정보접근·의사소통, 사법·행정 및 기타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할수 있다.

상담의 처리결과는 정보제공과 정서적지지, 법률상담 및 절차지원이 등이 있다.

보고자료 2

2020년 경기북부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북부장애편권익옹호기관]

I. 조사배경 및 관련법령

1. 조사배경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두가지 내용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한 삶과 그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았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장애인의 기본권 및 인권문제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위해, 국가에서는 여러 법률을 통하여 보장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생긴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중 이동권과 관련한 법률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아주 밀접하게 접근되어야 하고, 저상버스 보급률이 타국에 비해 낮은 우리나라(22.5%)¹⁾의 현실에서 바라보면 단순한 교통수단으로만 보기에 는 어려운 부분임이 분명하다.

1) 전국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총합 40,281대 중 저상버스는 9,064대로 도입률은 22.5% (2020.06, 2019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국토교통부)

이에 본 기관에서는 경기도가 민선7기에 접어들며 특별교통수단을 200%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이후 절반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2017년에 발표된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의 특별교통수단 실태조사 결과²⁾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조사항목은 법정대수 준수여부, 운영주체, 이용대상과 요금, 운행지역 등에 대한 사항이다.

2. 관련법령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국가법령 및 조례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투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별교통수단(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까지로 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도(道)는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2017년 경기북부 장애인권정책 토론회 자료집 (2017.11,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를 말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내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제20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영)
2. 운행지역
3. 이용요금
4. 그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20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 수준으로 하되 해당 시·장·군수가 정한 요금으로 한다.

II.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1. 운행차량 현황 및 운영주체

<표 1-1>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 현황 및 운영주체 비교표

구 분	2017년 자료			2020년 결과			운영주체	운행 개시 년도	비 고
	운행 차량	법정 대수	비율(%)	운행 차량	법정 대수	비율(%)			
가평군	7	8	87.5	16	11	145.4	가평군시설관리공단	2017.11	운영 주체 변경
고양시	73	43	169.7	86	77	111.6	고양도시관리공사	2010	-
구리시	9	9	100	17	15	113.3	구리도시공사	2017.9	-
남양주시	16	27	59.2	42	53	79.2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	2015	-
동두천시	9	7	128.6	14	12	116.6	동두천시모범운전자회	2010	-
양주시	20	12	166.6	21	22	95.4	양주시시설관리공단	2016	-
연천군	4	4	100	13	6	216.6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14	-
의정부시	22	21	104.8	39	40	97.5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2009	-
파주시	26	20	130	36	39	92.3	파주시시설관리공단	2013	-
포천시	17	11	154.5	17	18	94.4	포천시시설관리공단	2012	-
총계 (평균값)	203	162	125.3	301	293	102.7	-	-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은 시·군의 격차를 보지 않고 합산의 기준으로만 보았을 때 법정대수가 총 293대로 나타나고, 실제로 301대가 운행되고 있어 법정대수 조건에는 충족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의 값을 비율로 계산하면 102.7%로 2017년의 125.3%의 평균값을 보였던 것이 오히려 줄어든 양상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정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어야 하는 운행차량 대수는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증가 흐름에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이용자의 1인당 이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시·군별 상황으로 보면, 10개 시·군 중 법정대수의 요건을 충족한 곳은 5곳으로, 2017년에 8곳이 충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면 상황이 열악해 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천시와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늘어나는데 운행차량 증차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양주시·의정부시·파주

시와 같은 경우는 증가 되는 장애인 인구수에 따라 법정대수도 함께 증가가 되는것에 비해 증차비율이 따라주지 못하여 결국 법정대수 미달이 되어 버렸다. 반면, 가평군과 연천군은 눈에 띄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운영주체와 같은 경우, 남양주시와 동두천시를 제외한 8개의 시·군이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 등을 통해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가평군은 장애인단체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가평지부’ 에서 운영을 하다 2019년 9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되었으며, 타 시·군은 기존 운영주체가 운영 중이다.

2. 대상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은 국토교통부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장애인, 65세 이상의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그 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과 이 모든 범위의 교통약자의 동반자(가족, 보호자)로 정의 하고 있다.

그리하여,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았다.

〈표 2-1〉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조례명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이용대상 범위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그 외 시·군 조례상 대상
가평군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①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②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고양시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구리시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	① 사고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한 휠체어 이용자
남양주시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중에서 휠체어 이용자 ② 통학목적(초·중·고등학교)으로 관내 통행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동두천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	○	①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양주시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연천군	연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
의정부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①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파주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① 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포천시	포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	○	①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② 임산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조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장애인, 65세 이상의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고양시, 양주시, 연천군을 제외하고 각 시·군의 조례상 이용대상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의 이행 정도를 확인해 보았다.

〈표 2-2〉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 비교표³⁾

구분	2017년 자료					2020년 결과				
	1·2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비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비고
가평군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고양시	○	○	×	×	노인요양1/2급 등록자	○	○	×	×	노인요양1/2급 등록자
구리시	○	○	×	×	-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남양주시	○	○	×	×	3급장애인중 휠체어이용자	○	○	×	×	장애의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중 휠체어이용자, 통학목적
동두천시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양주시	○	○	×	×	3급장애인중 휠체어이용자	○	○	○	×	임산부 (병원진료에 한함)
연천군	○	○	○	○	-	○	○	○	○	-
의정부시	○	×	×	×	-	○	×	×	×	-
파주시	○	○	○	○	-	○	○	○	×	일시적 휠체어이용자
포천시	○	○	×	×	3급장애인중 휠체어이용자	○	○	×	×	지체장애인중 3급이며 휠체어이용자

그 결과 8개의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안내가 적절히 이루어 졌으나, 포천시와 의정부시는 일부 특별교통수단 관련 정보가 누락 된 것으로 보인다. 포천시는 조례상에 명시된 임산부와 관련한 안내가 되지 않았으며, 의정부시와 같은 경우는 2017년 자료에 이어서 동일하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65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조례상의 임산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잘못하면 위반사항으로 보일 수 있기에 홈페이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3) 각 시·군 특별교통수단 홈페이지 이용 안내 자료

3. 이용요금

<표 3-1>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현황

구분	2017년 자료 (원/km)				2020년 결과 (원/km)				통행료 및 주차요금
	관내		관외	대기 가능여부	관내		관외	대기 가능여부	
	기본요금	추가요금			기본요금	추가요금			
가평균	1,300/10	100/5	100/5	-	1,300/10	100/5	100/5	병원진료 2시간대기	이용자 부담
고양시	1,500	없음	100/1	-	1,300/10	100/5	100/5	-	
구리시	1,200/10	200/1	200/1	-	1,200/10	200/1	200/1	병원진료 1시간대기, 병원외의 30분대기	
남양주시	1,200/10	200/1	200/1	-	1,500/10	100/5	100/5	-	
동두천시	1,000	없음	100/1	-	1,000	없음	100/1	-	
양주시	1,200/10	100/5	100/5	30분대기	1,200/10	100/5	100/5	30분대기	
연천군	1,000/10	100/1	200/1	1,000/30분까지	1,000/10	100/1	200/1	병원진료 2시간대기	
의정부시	1,000/10	100/1	100/1	-	1,000/10	100/1	150/1	병원진료 2시간 이내	
파주시	1,000	없음	100/1	-	1,000	없음	100/1	병원진료 사전신청, 60분 무료대기	
포천시	1,250/10	100/5	150/5	병원진료 2시간대기	1,250/10	100/5 관내은행 최대 2,050원	150/1	병원진료 2시간대기	

특별교통수단은 시내버스 요금체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500원(현금기준)에 비해 1,000원~1,500원/10km로 편성 되어 있어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나, 추가 요금의 경우 지역적으로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본요금이 동일한 구리시에서 양주시까지 약 28km(각 시·군의 시청 기준)를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요금 1,200원과 추가요금 3,600원을 더하여 총 4,8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반대로 양주시에서 구리시까지 이동하면 기본요금 1,200원과 추가요금 360원을 더하여 1,560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지역 간 이동에 있어 불합리한 금액은 장애인의 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는 만큼 추가요금에 대한 인하 및 지역 간의 편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광역통합체계의 도입이 필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2017년과 달라진 사항으로는 고양시는 기본요금이 인하되었지만 100원/5km의 관내 추가요금이 생겼으며, 포천시는 관내 은행 최대 요금 제한이 생겼다. 남양주시는 관내 기본요금이 인상된 반면, 관내·관외 추가요금이 모두 인하되었다.

4. 인접지역 운행여부

〈표 4-1〉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현황

구분	관내	관외		2017년 이후 변동사항
		병원진료	기타	
가평군	○	경기(양평, 남양주, 포천, 구리, 의정부) 서울, 춘천	-	-
고양시	○	서울, 경기, 인천 (증빙자료 제출과 3차 병원에 한함)	서울(강서, 마포, 서대문, 은평, 영등포, 서울역) 인천광역시(계양/인천국제공항) 의정부/파주/양주/김포/부천 등 인접 관외 지역	-
구리시	○	서울, 인천, 경기도		-
남양주시	○	서울(노원, 중랑, 광진, 강동), 구리, 하남, 광주, 양평, 가평, 포천, 의정부, 공항(본인 항공권 소지자)		양주, 고양, 김포, 파주, 동두천, 연천, 성남, 과천 제외
동두천시	○	즉시콜 : 동두천시, 인근시군(연천, 양주, 포천, 의정부) 예약콜 : 수도권 전지역		즉시콜과 예약콜로 지역구분
양주시	○	서울관내 병원	도봉산역, 수락산역, 구과발역, 경기북부, 공항, 서울	도봉산역, 수락산역, 구과발역 등 서울지역 추가
연천군	○	서울, 경기, 인천, 철원	환승목적인 경우 소요산 (동두천역 포함)	포천, 의정부, 파주, 일산 제외
의정부시	○	서울, 경기, 인천	도봉, 노원, 남양주, 양주, 포천, 구리, 고양(덕양), 공항(본인 항공권 소지자)	-
파주시	○	① 특장차 (수도권) ② 바우처택시 (고양, 김포, 양주, 연천) ③ 다인승버스 (650원 정액제 / 고양, 김포, 양주, 연천, 김포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
포천시	○	서울, 경기, 철원, 인천, 화천		-

운행지역의 범위는 각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거나 지자체의 특성에 따라 운영주체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가평군과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이어 병원 진료외의 목적으로는 관외 이동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남양주시와 연천군과 같은 경우는 관외 지역의 이동범위가 축소가 되었으며, 양주시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범위가 서울지역까지 넓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역을 제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배차가 되어 있는 운행차량의 부족으로 인한 회전을 저하가 가장 큰 이유가 되는데, 남양주시와 같은 경우는 현재 법정대수도 충족 되지 못하였고, 운행가능 지역이 축소가 된 상황이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증차)을 우선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조례상⁴⁾ 경기도 내 모든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시콜은 동두천과 인근시군으로만 운행하고 있어 조례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4)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제3항제2호.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동두천시민에 한하며,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동두천시일 경우 도내 어디서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두천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

5. 운영시간

<표 5-1> 2020년 경기북부 10개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현황

구분	예약	예약접수 및 상담문의		차량운행		2017년 이후 변동사항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가평군	2일전 예약	09:00~17:00	×	07:00~20:00		예약제도 생성
고양시	1일전 오전 10시 예약 (수도권 광역이동)	06:00~22:00		24시간		즉시콜상담이 24시간으로변경
구리시	2일전 예약 (즉시콜은 최소 2시간전)	09:00~18:00	×	24시간 (07:00~22:00 사전예약제)	09:00~18:00 (사전예약제)	평일 차량운행시간 24시간으로변경
남양주시	① 병원,통학:2일전 ② 일반목적:1일전 09:00~21:00 예약	상담: 07:00~21:00	상담: 토요일 07:00~16:00 (일,공휴일휴무)	24시간	24시간 (명절당일 휴무)	예약제 세분화, 평일·공휴일 차량운행시간 24시간으로 변경
	즉시콜:2시간이내	접수 :24시간(야간당직차량)				
동두천시	이용일 7일전부터 예약신청 가능 (즉시콜은 상시)	24시간		24시간		공휴일 상담 진행
양주시	2일전부터 예약 (09:00~18:00) (즉시콜은 당일 1시간 전 순번제)	07:00~23:00		예약이용 08:00~21:00		즉시콜 상담가능시간 증가
				즉시콜 07:00~23:00		
연천군	1일전부터 예약 1인 2회 제한 (즉시콜 포함)	08:00~17:00	토요일 08:00~12:00	24시간		상담, 차량운행시간 모두24시간으로 변경
		(야간 시간대 운전원 상담)				
의정부시	주말 및 공휴일 이용만 2일전 부터예약 (즉시콜은 상시)	24시간		24시간		-
파주시	1일 편도 4회 (즉시콜은 상시)	24시간		24시간		상담 24시간으로변경
포천시	2일전 선착순 예약 (즉시콜은 상시)	08:00~21:00	토·일요일 09:00~18:00	24시간		상담 24시간으로변경
		(야간 시간대 운전원 상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은 24시간 365일 연중무휴⁵⁾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경기북부 10개 시·군 모두 조례상 ‘상시운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평군, 양주시⁶⁾는 평일과 공휴일 운영 모두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⁷⁾는 공휴일 운영에 제한을 두어 이 또한, 위반 사항이 된다.

즉, 10개 시·군 중 60%인 6개 시·군만 규정을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경기북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새벽시간대의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5)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 제1항.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영)
 6) 「가평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항. -생략- 상시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1항. -생략-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7) 「구리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 -생략-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2항. -생략-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생략-

6. 제한규정

경기북부 10개 시·군 내에는 지자체별로 특별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다양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평균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위한 규제로 왕복운행에 대한 사항이나 1일 예약 한도, 탑승인원의 제한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 동두천시와 같은 경우는 특정 장애영역을 지칭하여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으면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포천시는 이용대상자가 장애인과 65세 노인밖에 없는데 ‘운전에 방해할 줄 수 있는’ 이라는 알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여 보호자 동승 없이는 이용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내용은 장애인은 언제나 보호자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특정 장애영역은 혼자 탑승하면 사고가 날 것이라고 단정을 지어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며, 자립을 한 장애인과 같은 경우, 특정 장애영역에 해당하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는 배경이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표 6-1〉 동두천시·포천시의 특별교통수단 제한규정의 일부

구분	해당 제한 내용
동두천시	지적·자폐성·정신장애 고객이 보호자 없이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포천시	운전에 방해할 줄 수 있는 고객 탑승시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Ⅲ. 광역이동지원센터

경기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2항 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광역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를 돕는 방식으로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전화 접수 등의 방법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말 그대로 경기도 내 각 시·군 이동지원센터 간의 ‘연계지원’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각 시·군에 각각 예약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제한을 없애거나, 이용요금을 통일한다거나, 새벽에 이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지역에 예외적용을 해준다는 식의 방법은 아니기에 지역적 편차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 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IV. 맺으며

위에서 언급해온 사항들은 비단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이 마찬가지로의 상황으로서,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각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하게 되는 주체와 이용요금, 이동범위 등의 방식이 모두 다르다. 그리고, 각 시·군의 운영 방식에 따라 제한규제나 한도 등이 정해져 있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을 하는 장애인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물론,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울시는 차고지를 제외한 운영을 통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도 같은 경우는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모든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운행시간 통합과 요금 단일화 등을 추진하였고,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분산되어 있는 체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경기도와 같은 경우, 지리적 특성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있으며, 인접지역을 가기 위해서도 대중교통으로는 서울을 거쳐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내의 특별교통수단은 당사자들의 욕구가 만족 되기엔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요구에 대하여도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0년 08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담아 2021년까지 ‘광역통합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조례 개정을 우선으로, 각 시·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요금 등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통일시킬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광역통합운영 체계도’를 확립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경기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 특별교통수단이라 함은 저상버스의 낮은 보급률 등으로 인해 대체 도입된 제도이기 이전에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평등성 보장의 일환이기에, 각 지자체가 경기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의무이자 책무라 생각된다.

보고자료 3

2020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보고서

-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변화 및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I. 들어가기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변화 모니터링의 시작

2012년 4월, 경기도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8년에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전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기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하여 2017년에 1기(2013~2017)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부터 2기(2018~202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의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는 순차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제정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조례에 따라 시·군에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목표 수립과 예산확보를 위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로 형식상으로만 세워진 계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 평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은 현재에 대한 평가와 차기 계획 반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찰하며, 참여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한다.

2. 모니터링의 근거와 단계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 제4호¹⁾에 의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1차 모니터링을 2019년에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는 작년과의 변화정도와 시·군의 이행정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가. 사업목적

- 경기북부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인권증진을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지향
- 체감도 있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제 발굴 및 실효성 평가

나. 사업목표

- 5년간의 기본계획에 대한 단계별 추진 확인 평가
- 추진과제 또는 시행계획 이행정도 정책 평가

다. 사업범위

- 시간적 범위 : 2020년 현재
- 공간적 범위 :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평군,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라. 사업추진단계²⁾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조례제정 실태 확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 확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직전년도 변화정도 평가			

1)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 생략 -

③ 권익옹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조사 및 시정권고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교육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실시
5.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6.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7.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8.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차별금지 업무
10.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업무

2) 시·군별로 추진현황이 다름에 따라 직전년도(2019년) 사업추진 7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 시행

II.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현황

1. 2019년 모니터링 실시 결과

2019년 경기북부 10개시·군 모니터링 결과는 표적대상인 10개의 시·군의 데이터 중 2곳을 제외 한 8곳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4곳에 불과 하였다.

조례가 제정된 8개 시·군의 경우 2개의 시·군 만이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이 반영되었고 나머지 6개의 시·군은 제정이 최근(3년 내)이었거나 제정 된 이후의 변화가 없는 상태였다.

조례에 의해 기본계획을 수립 한 4곳 中 구리시와 같은 경우, 조례상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 수립을 하였으며, 총 27가지 사업계획 안에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은 총 3개의 사업만을 담고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표 1-1〉 2019년 경기북부 10개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및 기본계획 수립 현황³⁾

구 분	조례 제정을 (1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2단계)
고양	제정(2015.10.08.)	수립(2016.11.)
남양주	개정(2019.04.11.)	수립(2019.02.)
연천	제정(2016.07.08.)	수립(2018.01.)
구리	제정(2015.04.20.)	대체수립(2018.10.)
가평	개정(2018.04.11.)	미수립
동두천	제정(2013.11.18.)	미수립
파주	제정(2013.05.14.)	미수립
포천	제정(2014.12.29.)	미수립
의정부	미제정	미수립
양주	미제정	미수립
계	8곳 (80%)	3곳 (30% / 구리시 제외)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각 시·군의 변화정도와 시행계획의 이행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2. 사업추진 1단계 : 조례제정 실태 확인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 2차. 시·군 질의

3) 2019년 경기북부장래인권익옹호기관 상담사례보고대회 자료집 (2019.10)

나. 결 과

<표 2-1> 경기북부 10개 시·군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조 례 명	제 정	개 정	질의응답	변화정도
가평	가평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2.02.29	2018.04.11	-	-
고양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10.08	-	-	-
구리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20	-	-	-
남양주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5.04.06	2019.04.11	-	-
동두천	동두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11.18	-	-	-
연천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6.07.08	-	-	-
파주	파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3.05.14	2019.12.27	-	일부개정
포천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14.12.29	-	-	종합계획 별도수립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2019.10.30	-	-	
의정부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2020.09.22	-	-	신규제정
양주	해당 사항 없음.	-	-	응답없음	-

경기북부 10개 시·군 中 양주시만 유일하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2019년 에 비해 변화를 보인 곳은 파주시, 포천시, 의정부시 3개의 시·군이었고, 나머지 6개 시·군은 별 다른 변화 정도는 없는 상태 였다. 파주시의 경우,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의 개정 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수당과 관련하여 일부개정이 된 사항으 로 관련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 는 어려웠다.

그리하여, 변화가 발생한 포천시와 의정부시를 중점 관찰 시·군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살펴 보았다.

다. 중점 관찰 시·군의 변화정도

1) 포천시

포천시와 같은 경우는 2019년 모니터링 당시, 분산된 포천시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합·정 비하여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이와 관 련 된 조례가 실질적으로 제정이 완료 되었다.

위 조례는 기존 「포천시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외 5개의 조례를 폐지하며 통합을 시도한 장애인 복지종합계획으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장애인 이동권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등의 중요 정책단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다른 조례들은 폐지가 되었으나 기존 의견에 따라 통합하고 폐지를 하겠다던 「포천시 장

에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폐지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비추어 보아 조례상으로는 ‘장애인복지종합계획’ 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이 모두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를 한 결과 포천시는 두가지의 조례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우선, 이 두가지를 모두 운영하겠다는 것 자체와 새로이 제정된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은 제공자 중심의 계획과 당사자 중심의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그 균형이 잘 맞추어 질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또한 「포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에는 구리시의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있어 6개의 조례를 폐지하며 만들어낸 이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이 단순히 몇가지의 사업만으로 대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한다. 참고로, 포천시와 같은 경우는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약 6년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표 2-2> 포천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비교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용	수립기한	내용	수립기한
포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기본방향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유형별 시책 3.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4. 교육 및 홍보 5.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6. 재원조달 7. 그 밖의 인정사항	수립기한 없음.	세부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포천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2. 장애인 복지시책의 수립시행 3.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4.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 장애인 이동권 보장 6.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9. 장애인 평생교육권 보장 10.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11. 장애인 체육진흥사업 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계획 13.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의 홍보 14.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활동 지원 15. 포천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1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17. 그밖의 인정사항	5년마다 수립시행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지원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 4. 장애인 인식 개선 5.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장애인단체 지원 6.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8. 장애인 가족지원 9.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자립생활 실태조사 10.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및 지원 11. 청각언어장애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지원 12.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지원 13. 그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	수립기한 없음.

2) 의정부시

의정부시는 2020년 8월 14일에 의원발의를 하고,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수립하였다.

<표 2-3> 의정부시 조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용	수립기한	내용	수립기한
의정부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유형별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책 개발 및 추진전략 4.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 5. 행정상 재정상의 지원방안 6. 그밖의 필요사항	수립기한 없음.	세부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그 내용은 현재, 동두천시, 연천군, 남양주시와 동일하며, 정책의 방향은 있으나 그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어 보통 5개년 계획을 기본으로 하는 기본계획 자체가 단계별 계획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조례상 시행계획에 관한 내용은 아예 담고 있지 않아 시행의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궁금증도 생기는 상황이다.

3. 사업추진 2단계 : 기본계획 수립 실태 확인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시·군 인터뷰(질의) 및 자료공유 요청

나. 결 과

<표 3-1> 경기북부 10개 시·군 기본계획 수립 현황

구 분	기본계획 연구	회기	조례제정 시기	수립	질의응답	변화 정도	비고
고양	고양시 장애인차별실태복지욕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1	2015.10.08	2016.11	-	-	-
남양주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	2015.04.06	2019.02	-	-	-
연천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1	2016.07.08	2018.01	-	-	-
구리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	4	2015.04.20	2018.10	-	-	대체수립
가평	해당 사항 없음.	-	2012.02.29	-	서면응답	없음	추후 계획 수립
동두천	해당 사항 없음.	-	2013.11.18	-	서면응답	없음	2021년 수립예정
파주	해당 사항 없음.	-	2013.05.14	-	응답없음 (유선질의)	없음	논의필요
포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해당 사항 없음.	-	2014.12.29	-	서면응답	없음	추후 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종합계획) 해당 사항 없음.	-	2019.10.30	-			
의정부	해당 사항 없음.	-	2020.09.22	-	서면응답	조례제정	추후 계획 수립
양주	해당 사항 없음.	-	-	-	-	-	-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조례가 제정된 곳은 올해에 제정된 의정부시를 포함하여 총 90%인 9곳이 되었고, 그중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곳은 총 8곳으로 변화하였으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곳은 작년과 동일하게 총 4곳이다. 즉,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는 수립에 관한 계획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시·군 중 조례 제정 실태 확인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포천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가평군, 동두천시, 파주시를 중점 관찰 시·군으로 결정하여 보았다.

다. 중점 관찰 시·군의 변화정도

1) 가평군

가평군은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곳이며, 조례상 비록 수립기한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유일한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후 약 8년간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을 질의한 결과 정확한 시점에 대한 언급 없이 추후에 가평군복지재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에 수립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다.

2) 동두천시

동두천시는 가평군과 파주시 다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시·군으로, 2019년 모니터링 당시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던 곳이었지만 올해에는 2021년에 ‘동두천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동두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살펴 보면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종합계획’으로 대체 수립한다는 내용이 없는 관계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수립하기 전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이 좋은 방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혹여 포괄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복지종합계획으로 대체수립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영역이 축소 될 수 있기에 이는 별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파주시

파주시와 같은 경우는 조례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이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던 곳이었다. 이는 목표와 연구 없이 시책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며, 재정확보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아, 단계별 발전 방향이 아닌 1년 단위 사업으로 예산 종결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 당시, 관련 내용을 확인한 담당공무원의 의견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수립하기에 적절치 않아 내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표 3-2> 가평군, 동두천시, 파주시 조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

구 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내용	수립기한	내용	수립기한
가평	1.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유형별 세부시책 3. 정책과 실태조사 지표개발 4.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 6.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밖에 필요사항	수립기한 없음.	1.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 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교육계획 5. 그밖에 필요사항	수립기한 없음.
동두천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 5. 행정 및 재정지원방안 6. 그 밖의 인정사항	수립기한 없음.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파주	관련내용 없음.	관련내용 없음.	1. 편의제공 세부시책 2. 실태와 대응방안 3.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의 인정사항	매년 수립시행

4. 사업추진 3단계 :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이행사항 모니터링

가. 사업 추진 방법

- 1차. 시·군 인터뷰(질의) 및 자료공유 요청
- 2차. 모니터링 설문지 작성 후 회신 요청
- 3차. 시·군 예산 확인 및 자료 분석

나. 모니터링 내용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고양시, 남양주시, 연천군, 구리시 총 4곳(모니터링 상으로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으로 대체 수립된 구리시 포함)으로서 이곳을 중점 관찰 시·군으로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하였다.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는 목표의 단계는 각 지역에 맞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시책을 구분 지어야 하기에 동일한 기준선이 나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인권헌장⁴⁾’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⁵⁾’을 기반으로 5대 영역과 18개의 분류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안에 각 시·군의 기본계획안에 해당 되는 영역을 분류하여 그 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 여부를 확인 하였다.

4) 장애인인권헌장 (1998)

5)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 계획 (국가인권위원회, 2013)

모니터링 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영역과 분류

영역	분류
① 평등한 참여	정책결정 참여권/참정권, 생존권, 접근권
② 기본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가족생활권/거주권, 재산권, 건강권, 이동권, 자기결정권/의사결정권, 문화향유권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배제·학대받지 않을 권리
④ 사회적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정신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애아동의 권리
⑤ 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 이행	-

다. 결 과

<표 4-2> 고양시, 남양주시, 연천군, 구리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표

(2020년 기준)

구분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연월	시행연차 (계획연한/ 현 진행연수)	연간 추진계획에 따른 이행정도 (자체평가,%) 6)	영역 및 분류 구분에 따른 기본계획의 구성 비율(%) 7)	자체 수립 기본계획 대비 시행 비율(%) 8)	별도 시행계획 수립여부
고양시	2016.11	5/4	100	26.3	6.8	부
남양주시	2019.02	5/2	96	52.6	82.1	부
연천군	2018.01	5/3	평가없음	57.8	6.8	부
구리시	2018.10	4/2	응답 없음.			
평균			98	45.5	-	-

기본계획이 수립 되어 있는 4개의 시·군 중 구리시를 제외한 3개의 시·군에서 모니터링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기본계획대비 시행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각 시·군의 자체평가는 9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그 사업 중 실제 인권보장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추진사업은 45.5%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래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할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기존 서비스 제공자 중심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기본계획 수립 시, 당사자의 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수렴해야 하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립 되어져 있는 기본계획 대비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은 각 시·군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평균을 내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 되었다.

위 4곳을 중점 관찰 시·군으로 설정하고 살펴 보았다.

6) 각 시·군의 기본계획상 시행연차부터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정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한 지수

7) 각 시·군의 기본계획에 따른 실제 추진사업이 모니터링상 인권보장 전체 영역 및 분류에 차지하는 비율

8) 각 시·군에 수립된 전체 기본계획 대비 실제 추진 되고 있는 사업의 비율

다. 중점 관찰 시·군 과 이행사항 정도

1) 고양시

가) 기본계획

〈표 4-3〉 고양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⁹⁾

전략목표	전략과제	실행과제
1. 차별금지 영역별 장애인 인권보장	1.1. 장애인 생존권·거주권 보장 및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내실화 외 1개
	1.2.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 실태조사 및 예방적 의료지원 강화 외 1개
	1.3.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지원	꿈의 버스 확대 및 장애인 권리 기반 교통환경 조성
	1.4.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지원	접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무장애환경 인증제 도입
	1.5.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및 지원	장애유형별 의사소통 종합지원대책 수립 외 1개
	1.6. 장애인 문화·관·소비자권 보장 및 지원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경제적 지원 강화
	1.7. 장애인 교육·관·노동·관·재산권 보장 및 지원	맞춤형 교육·직업·훈련 강화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외 1개
2.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2.1.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인권보장	장애인 임신부 출산권 보호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외 3개
	2.2. 발달·정신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 외 2개
	2.3. 장애아동 권익 보호 및 가족에 대한 지원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 외 2개
	2.4. 고령화 장애인 특화서비스로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 특화서비스 지원
	2.5. 거주시설 장애인 권익보호 및 인권보장	인권에 기반한 거주시설 환경 조성 외 1개
3. 장애인 인권보장 추진 체계 및 기반 강화	3.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도 정비	장애인 복지위원회 인권보장 기능 및 역할강화 외 2개
	3.2. 차별·인권침해 실태 모니터링체계 구축	정기적인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외 1개
	3.3. 장애인복지 통합운영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복지 통합조직시스템 구축
	3.4. 지역별·장애유형별 균형 있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덕양구 장애인복지관 설립 및 운영 외 2개
4. 지역사회 및 시민 참여확대	4.1. 장애인 단체지원 및 네트워크 강화	장애인복지전달체계·인권보장체계 협력네트워크 강화
	4.2. 장애 인식 개선사업 확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 활성화 외 1개
	4.3. 장애인 인권교육 내실화 및 홍보 강화	장애인 인권교육 매뉴얼 제작 및 보급
	4.4. 장애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장애인 인권보장 직무교육 강화 외 2개

고양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은 4대 전략목표, 20개 전략과제, 40개 실행과제 및 88개 세부추진과제로 2016년 11월에 수립되었으며, 5년마다 수립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2022년에 수립될 2기 기본계획의 평가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21년은 제2기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이긴 하나 현재, 시청 내 인권증진팀에서 장애영역만이 아닌 전 영에 대한 통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TF를 구성한 상태이며, 이것에 대하여는 장애영역은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9) 고양시 장애인 차별실태·복지육구 조사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제안연구 (2016.11.)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6항」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6」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4-4> 2020년 고양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2020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고양시	98,244	1,806	1.8%

예산과 같은 경우 조례에 따라 제정확보에 대한 노력은 있었으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예산은 전체 장애인복지예산에 1.8%의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현재(2020년)의 기준만이 아닌,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추진하였던 4년의 기간 동안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배정되었다는 점과 기본계획의 규모(총 88개의 추진사업) 보다 확보된 예산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

② 홍보 현황

<표 4-5> 2020년 고양시 홍보 현황

(기준 : 2017년~현재)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홍보물	물품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언론보도	그외
고양시	-	-	-	-	3	-	38

고양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현황은 통상적인 대외 홍보활동 보다 캠페인 성의 홍보 행사와 장애인식개선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장애인작품전시회를 18년에 1회, 19년에 2회 실시 하였으며,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활동으로 18년에 10회를 기준으로 1,082명에게 홍보를 하였고, 10년엔 28회를 기준으로 3,421명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기본계획이 시행이 되었던 첫해인 2017년에 집중적인 활동을 실시 하였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표 4-6> 2020년 고양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88개			6개 (기본계획 외 2개사업 제외)		6.8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고양시	① 평등한 참여	생존권	(1.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내실화	5개의 도비 지원센터와 1개의 시비지원센터로 운영 (4개의 센터를 도비지원센터로 상향지원)	100
			(기본계획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	
	② 기본권 보장	이동권	(1.3.1) 꿈의버스 확대 및 장애인 권리 기반 교통환경 조성	2017년 33인승 버스 증차 후 현재 2대 운영	100
	③ 차별시정 및 예방	배제·학대받지 않을 권리	(2.5.2) 거주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 강화	매년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100
				관내 48개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 인권 및 성교육 실시	
	④ 사회적 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2.1.1) 장애인 임신부 출산권 보호 및 의료비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00
장애아동의 권리		(2.3.1) 장애아동 통합교육 실현과 교육환경 개선	고양시 거주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기본계획 외) 장애유형별 건강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건강교육 실시	장애전담어린이집1개소와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	100
	그외	(4.2.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발달재활서비스 기능 강화	-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고양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88개의 추진 사업 중 기본계획에 해당 되지 않은 사업 2가지를 제외하고 총 사업 대비 6.8%인 6개의 사업만이 추진되었거나 시행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 82개의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 고양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설문조사, 장애유형별 분임토의, 정책워크숍등을 통해 경기북부 10개시·군 중 가장 많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낸 계획이었지만 이 모든 소리의 6.8%만 시행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며, 2022년 세워질 제2기 기본계획을 위해 2021년에 수립하는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인지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고양시의 장애인등록인구수는 40,957명¹⁰⁾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10) 고양시 등록장애인현황 (경기도청, 2019년 12월 기준)

2) 남양주시

가) 기본계획

<표 4-7>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1)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 장애인 기본권 보장 및 자립생활 기반 구축	1.1.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충 및 개선 외 3개
	1.2. 장애인 여가생활 지원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외 3개
	1.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인프라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교육 확대 외 6개
2.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확대	2.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표개발 추진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
	2.2. 장애인 차별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시설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권교육 내실화 외 4개
3.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인프라 구축	3.1. 지역사회 장애인 만관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인권·복지 실무자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 외 1개
	3.2. 장애인 권익증진 기능 강화	장애인 권익증진 전담 기구 설치 및 운영
4. 장애인 가족 지원 활성화	4.1.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기반구축	남양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4.2. 장애인 가족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외 2개

남양주시의 기본계획은 4대 정책목표, 9개 정책과제, 28개의 세부추진과제로 2019년 02월에 수립되었으며, 기본권 등의 장애인 생활실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그에 따른 기본권 보장과 인프라 구축 외 네트워크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강화하여 수립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2019년부터 시작으로 5년 후에 위 정책과제를 평가하게 된다.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5」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4-8> 2020년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2020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남양주시	62,196	40,512	65.1%

남양주시의 예산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에 65.1%의 높은 비율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추진예산으로 잡은 것을 볼수 있다. 또한, 2019년부터 기본계획이 시작되어 2년차에 돌입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의 예산액(33,155백만원) 보다 22.1%를 증가 시킨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복지서비스 제공 위주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사업으로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수 있다.

11)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실태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2019.02.)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② 홍보 현황

<표 4-9> 2020년 남양주시 홍보 현황

(기준 : 2019년~현재)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홍보물	물품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인론보도	그외
남양주시	-	-	2	-	-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현황은 별다른 시행 없이 연1회 정도의 인쇄홍보물이 배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홍보는 인식개선의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활용 될 수 있는데 그러한 활동까지 연결되지는 못한 것이었으며, 많은 비중의 사업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큼 홍보의 비중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표 4-10> 2020년 남양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28개			23개		82.1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남양주시	① 평등한 참여	생존권	(4.2.2) 생애주기별 장애인 돌봄체계마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재활언어발달서비스 지원 방과후프로그램 운영(29개)	90
			(1.3.1) 장애인 자립생활교육 확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체험홈운영(3개소)을 통한 자립생활 교육 확대	
		접근권	(1.1.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추진(BF추진)	북부장애인복지관 건립 BF인증 추진	90
			(1.3.7) 농아인 컴퓨터 설치 및 운영	남양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농아인컴퓨터 설치 및 운영 농인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② 기본권 보장	노동권	(1.3.2) 장애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여건 및 기반 조성	특수학교 학급 졸업학생을 위한 취업진로 상담 및 구인구직 연계행사 job&job 운영	100
		교육권	(1.2.1)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실시 (60명 배출)	100

		(1.3.6) 북부장애인복지관 추가 건립 및 운영	북부장애인복지관 개관 예정(20.11.)	
	가족생활권/거주권	(4.2.1) 장애인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3.5)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	장애부모를 위한 소규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90
	이동권	(1.1.1)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충 및 개선 (1.1.2) 장애인주차장 관리 강화 (1.1.4)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확대	특별교통수단 확대 (34대→42대) 장애인특장차량(5대) 및 무료셔틀버스(2대)운영 장애인주차구역 집중단속구역 운영 30개소 선정 및 안내표지 설치 장애인이동보장구 수리센터 1개소 설치 및 개별 수리비용 지원	100
	문화향유권	(1.2.2) 권역별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화 (1.2.3) 장애인체육 인프라 구축	장애인 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 지원 신설 장애인체육단체 지원(지속)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신설 및 차량지원 장애인생활체육 종목 공모사업 실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배치지원(4명)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 (40명)	100
③ 차별시정 및 예방	차별받지 않을 권리	(2.1.1)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속 (3.1.2) 인권지킴이단 운영 활성화	남양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인권지킴이단 상시 운영(12개소)	100
	배제·학대받지 않을 권리	(2.2.1) 장애인시설장애인단체 종사자 인권교육 내실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 실시	90
		(2.2.2) 장애인시설장애인단체 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시설단체 종사자 역량교육 실시	
		(2.2.3) 장애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상시화	활동지원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2.2.4)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교육 지속화 및 체계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개선교육 실시	
	(2.2.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홍보 강화	홍보사업 실시		
④ 사회적 기반	발달장애인의 권리	(1.3.3) 발달장애인 커피점 설치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뜨란5호점 개소	100
		(1.3.4)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발달장애인 특화형 체험홈 운영(2개소)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남양주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28개의 추진 사업 중 총 사업 대비 82.1%의 높은 비율로 23개의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6개의 사업은 휴게시설 및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확대, 장애인 인권·복지 실무자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강화 등의 사업으로 추후 진행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남양주시와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기본계획상 여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아동 등의 사회적기반 사업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았거나,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영역의 건강권 및 생활권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다. 올해에 이와 관련한 위원회를 재위촉한 남양주시는 위원회의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견고히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3) 연천군

가) 기본계획

〈표 4-11〉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2)

정책목표	핵심과제	추진사업
1. 차별금지를 통한 인권보장	1.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외 1개
	1.2.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인권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장애인 인권전문가 양성 외 2개
	1.3. 장애인 인권옹호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인권옹호 센터 설치 및 운영 외 3개
	1.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외 2개
2. 기본소득과 근로권 보장	2.1.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의 현실화 외 1개
	2.2. 장애수당의 지자체 급여지원 확대	장애수당의 지자체급여 지원확대
	2.3.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외 4개
	2.4.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대	창업지원 확대 외 2개
	2.5.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외 1개
3. 교육권, 문화여가권 보장	3.1. 순회교육	순회교육 실시
	3.2. 개별화교육 강화	일반학급 배치 장애학생 개별화교육 지원강화
	3.3.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3.4. 통합교육 실현과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장애학생 이해 증진 위한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외 1개
	3.5. 문화여가 경제적 지원	문화마우처 사업강화 외 1개
	3.6.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원	문화여가 활성화 프로그램 공모 외 1개
	3.7. 문화여가 인프라 개선	장애인 생활체육 강화 외 1개
4. 건강권의료보장	4.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 유형 및 특성,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 설계 외 3개
	4.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4.3.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 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 제공 외 1개
	4.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개발 외 1개

12) 연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 (2018.01.)

5. 생애주기별 인권 보장	4.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등록관리조사
	4.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장애인 건강 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외 3개
	4.7.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
	4.8.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
	4.9. 재활운동 및 체육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에게 제공 외 2개
	4.10. 장애인 건강주치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 제도 시행
	4.11. 의료비 지원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 지급
	5.1. 장애인 모성권보장	여성장애인의 결혼 전 모성교육 외 3개
	5.2.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의 폭력으로부터 보호	장애여성 및 아동 성폭력전담팀 구성 운영 외 2개
	5.3.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노인장애인 통합복지관 설치 운영 외 2개
	5.4. 생애주기별 장애인 가족지원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외 2개
5.5.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지원 체계구축	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환경 구성 외 2개	

연천군의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 32개 핵심과제, 73개의 추진사업으로 2018년 01월에 수립되었으며, 재 수립기한이 없어 어느 시점에 재평가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지는 알 수 없다. 노인 인구비율이 높아 자연스럽게 장애인 인구비율 중에도 60대 이상 노인장애인이 53%에 해당하는 지역인 만큼 건강권·의료권에 대한 목표가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장애인통합복지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시설 설치와 일자리 창출, 각종 교육권 보장을 중점사업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예산

① 재정 확보 근거

-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의 5」

② 재정 확보 현황

<표 4-12> 2020년 연천군 장애인 복지 예산 현황

(2020년 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장애인복지 전체 예산(A)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B)	비율(B/A*100)
연천군	9,217	22.1	0.2%

장애인복지 전체예산 대비 기본계획에 따른 예산은 0.2%로 2018년 기본계획의 시작시점(12.8백만원)에 비해 현재까지 72%가 증가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사업을 수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 또한, 연천군의 기본계획 안에는 예산까지 수립(2020년 예산 계획 4,372백만원)되어 있는 세밀함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상태는 계획대비 0.5%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사업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다) 홍보

① 이행 근거

-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9조」

② 홍보 현황

<표 4-13> 2020년 연천군 홍보 현황

(기준 : 2018년~현재)

구분	온라인		오프라인			기타	
	영상홍보	홈페이지 홍보	인쇄홍보물	물품홍보물	캠페인 및 홍보행사	언론보도	그외
연천군	-	3	-	-	2	4	1

연천군은 확보된 예산에 비해 홍보의 횟수는 타 시·군보다 높은 편이다. 홈페이지 홍보는 물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보도가 4회가 실시 되는 등 연 평균 3회 이상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보였다. 특히,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장애인 선거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홍보를 진행하였던 것은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보였다.

라)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 결과

<표 4-14> 2020년 연천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이행사항 모니터링 결과표

기본계획상 추진사업의 수 (A)			실제 추진 사업의 수 (B)		실제 추진정도 (B/A*100,%)
73개			5개 (기본계획 외 8개사업 제외)		6.8
구분	인권보장 영역	분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목록	관련 내용 기술 요약	자체판단 이행정도(%)
연천군	① 평등한 참여	정책결정 참여권/ 참정권	(기본계획 외) 투표소 모니터링 사업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실시	-
		생존권	(기본계획 외) 자조모임 및 자립생활기술훈련 (ILP) 지원사업	월 2회 총 20회 이상의 정기적인 자조모임 실시 및 도예교실, 요리교실,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지원	
			(기본계획 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보조 지원사업 확대	
		접근권	(3.7.2.) 문화 여가시설 내 편의시설 실태 조사	베리어프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동권 제약을 가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도모	
	② 기본권 보장	노동권	(2.3.5.) 복지일자리 확대 (장애인 일자 리 사업)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으로 구분되어 매년 실시	-
		가족생활권/ 거주권	(5.3.2.) 중증노인장애인 가정환경개선 사업	중증장애인 주택 내 전동리모컨 교체 및 디지털 도어락 설치 및 주거서비스 지원	
(5.4.1.)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완료		

	건강권	(기본계획 외) 보장구수리지원사업	보장구 수리부품 교체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 방법 과 유지보수 및 관리방법 교육	
	이동권	(기본계획 외) 긴급이동지원 사업	관내 이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무료 이동지원	-
③ 차별시정 및 예방	배제·학대받 지 않을 권리	(1.1.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캠 페인 사업	수동전동휠체어 체험 및 여러 장애관련 캠페인 활동 실시	-
④ 사회적 기반	여성장애인의 권리	(기본계획 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정신장애인의 권리	(기본계획 외) 정신장애인을 위한 중증정신질 환자 사업	사례관리서비스,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및 자조모임, 응급상황 및 위기 관리 개입	
	장애아동의 권리	(기본계획 외)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치료 운동 등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 이 외 영역에는 해당사항(추진사항)이 없음				

연천군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이행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총 73개의 추진 사업 中 기본계획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8가지를 제외하고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총 사업 대비 6.8% 아쉬운 진행율을 보였다. 그리고, 연천군에서는 자체평가를 하지 않아 관련 내용은 없다. 그리고, 설문사항에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자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5.4.1. 장애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2020년 ‘연천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그 외의 기본계획과 관련한 이야기는 기본계획 내 ‘5.3.1. 노인·장애인 통합복지관 설치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복지관 설립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 있었다.

4) 구리시

가) 기본계획

<표 4-15> 구리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13)

추진전략	세부사업
1.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복지넷활성화 외 6개
2. 커뮤니티 케어기반 구축강화	장애아동 돌봄확충,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지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건립 외 3개
3.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외 3개
4.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대	학교사회복지실 확대 운영 및 역량강화 외 3개
5. 사회투자를 통한 인적자본 개발	두자녀가정 지원강화 외 6개

13) 제4기(2019-2022) 구리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8.10)

구리시는 「구리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3항」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 아닌 ‘제4기 구리시 지역사회보장계획(2019-2022)’으로 대체 수립 되었으며, 5대 추진전략,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 중에 장애인 관련 사업계획은 장애아동 돌봄 확충, 장애인 정서 및 발달재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 학습센터 건립과 관련한 총 3개이며 이 사업만으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구리시는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여러번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끝내 응답하지 않아서 관련 진행을 종료 하였다. 구리시의 등록장애인은 8,764명(2019년 12월 기준)이며, 장애인복지 총예산은 20,616백만원 (2020년 기준) 이다.

5. 사업추진 4단계 : 모니터링 결과표

〈표 5-1〉 경기북부 10개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모니터링 결과표

구 분	조례 제정 실태 (1단계)		기본계획 수립율 (2단계)		이행정도(3단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기본계획 이행율(%)	별도시행계획 수립여부
고양	제정(2015.10.08.)	좌동	수립(2016.11.)	좌동	6.8	부
남양주	개정(2019.04.11.)	좌동	수립(2019.02.)	좌동	82.1	부
연천	제정(2016.07.08.)	좌동	수립(2018.01.)	좌동	6.8	부
구리	제정(2015.04.20.)	좌동	대체수립(2018.10.)	좌동	응답없음	응답없음
가평	개정(2018.04.11.)	좌동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동두천	제정(2013.11.18.)	좌동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파주	제정(2013.05.14.)	개정(2019.12.27.)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포천	제정(2014.12.29.)	추가 별도 수립(2019.10.30.)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의정부	미제정	제정(2020.09.22.)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양주	미제정	미제정	미수립	미수립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계	8곳 (80%)	9곳 (90%)	3곳 (30%/구리시제외)		-	-

2019년에 진행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모니터링 이후, 큰 변화를 보인 곳은 1단계(조례제정) 과정에서는 조례제정을 실시한 의정부시와 추가 별도 조례를 제정한 포천시였다. 2단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해당 모든 시군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올해 심층적으로 시작한 3단계(이행정도모니터링)과정의 결과는 응답을 하지 않은 구리시를 제외하고 그나마 1곳, 남양주시 만이 유일하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사업의 표적대상인 10개의 시·군 데이터 중 30%인 3곳의 내용을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전반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으며, 각 시·군의 조례제정과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촉구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본 사업을 종결하게 되었다.

Ⅲ. 마무리

1.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한계

경기북부 10개 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 사항 모니터링은 정책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그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질의를 통한 인터뷰 시에도 시·군에서 아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모르거나, 이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은 곳도 발생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2. 과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시·군의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이 과정은 기존 시혜와 복지의 차원에서 인식되던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문제로 전환하고, 그 토대로 장애인 인권의 측면에서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실시되었다.

최근 일부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장애인복지종합계획’을 통해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장애인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비스 제공자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되고 있고,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은 포괄적이거나 극히 일부의 담고 있어 인권보장의 영역을 모두 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엄연히 당사자 중심의 정책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은 다른 정책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함께 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정책 또는 계획으로 수립되어야만 한다.

이는 2006년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 접근성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담아 구성하여,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한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장애인으로서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발판을 법제화하는 과제가 분명하며, 이동권, 교육권,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참정권,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등 그 삶의 질을 보장받고, 향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2021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곳들을 비롯하여, 2기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있는 곳까지 시민과 약속의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 많아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번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해 이행이 부족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정책 현주소를 알게 되었듯, 기본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계획은 세워진 후 그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한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삶의 현장을 함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법으로도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당연히 개선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와 사회,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래본다.

발 표 Part 1.

발 표 1

발달장애인의 재학대 피해에 관한 지원방안**- 피해장애인에 대한 회복지원, 3년의 기록을 중심으로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총괄팀장 박 현 희]

I. 들어가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정의에 따라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착취, 유기 또는 방임으로 장애인학대를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2019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사례 중 5년이상 장기간 학대에 노출된 사례가 20%에 해당되고, 학대유형 중 2개 이상 중복하여 학대가 발생한 경우가 25.8%로 나타났다.

또한 아직 권익옹호기관의 통계를 산출한 기간이 길지 않아 통계화 하기에는 어려움이있지만 실제 접수되는 사례중에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되어 재학대 사례로 접수되는 사례도 많이 있다.

이처럼 장애인 학대 피해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고 2개 이상의 학대유형이 중복하여 나타나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자의 회복지원과 사후 모니터링의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

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기타 등 6개 영역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한 사례에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과정에서 지원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지원이 많고 하나의 사례에 하나의 지원유형이 아닌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필요로 한다.

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례는 장기간에 걸쳐, 하나의 학대유형이 아닌 다양한 학대가 중복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는 만큼 초기개입이 중요하며, 이후 피해자회복지원을

위한 지원과정 또한 다양한 지원체계로 구성되어야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2017년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로 개관한 이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중복·재학대사례, 일명 야채가게 노예 사건을 중심으로 초기개입과정과 이후 피해자회복지원과정, 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률지원 과정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의 권익옹호기관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II. 사건 개요 및 피해장애인의 학대 현황

▣ 피해장애인 인적사항

이 름 : A

나 이 : 40대

장애유형 : 중증 지적장애

사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 중증 40대 남성으로 2017년 3월 27일 주변 지인의 신고로 상담이 접수되었고 2017년 5월 17일 긴급분리 조치 되었다.

피해자는 언제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고 주변 상인들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크게 3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2010년부터 긴급분리전까지 야채가게 사업주(이하 행위자1)에 의해 피해자가 입은 학대는 노동력착취를 포함한 경제적 착취와 폭력에 의한 신체적 학대, 욕설 및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 난방도 되지 않고 화장실도 별도 건물에 있는 거주공간에 지내도록 한 방임 등으로 4개의 중복학대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자는 행위자1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하였고 사업주는 실종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계속 찾거나 고향집을 방문하여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반복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행위자1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알려주거나 데려다 주고,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이를 묵인하는 사회적방임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다.

2. 2014년 위의 탈출기간에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행위자(이하 행위자2)에 의해 일반음식점 1개소와 유흥주점 1개소의 사업장을 승계하여 1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적 착취와 그로 인한 통장 압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선이동통신결제용단말기 개통과 미납요금 발생등의 경제적 착취와 요금미납으로 인한 본인명의 핸드폰 개통이 안되는 피해가 있다.

3. 1997년 특정할 수 없는 행위자(행위자3)에 의해 피해자 명의의 차량구입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게 되어 발생한 5천여만원에 대한 채무독촉 과정에서의 불편과 경제적 착취가 피해자의

피해사례이다.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의 피해는 본인의 입으로 발화되어 진술되어 지는 것보다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기관 상담원에 의해 하나씩 발견 되어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를 파악하는 과정 또한 지원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뢰를 구축해야만 이후의 지원과정이 원활해 질 수 있다.

Ⅲ. 피해회복지원 과정

1. 신고 접수 과정 및 주변 탐문

2017년 3월 27일 중증 지적장애 남성의 강제노역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자는 피해자에 대해 지적장애3급이고 기초수급자며 나이는 50이 넘은 거 같고 이름은 B씨이고, 김밥집 옆 야채가게에서 일을 하며, 새마을 금고 앞에서 리어카를 놓고 물건을 판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신고자 본인이 구청에도 파출소에도 심지어 모방송사에도 제보하였지만 어느 곳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신고접수 후 다음날 현장방문을 하였고 피해자가 실제 노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주변 상인들을 통해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물건을 사기 위한 것처럼 대화를 시작했고 피해자가 팔고 있던 물건에 대해 가격흥정을 시도하였다. 그러자 “안되 혼나 내가 돈 물어야 해.” 손사래를 치며 안된다고만 이야기하고 상담원이 “장사하면 깎아 줄 수도 있지요” 하자 “안되 혼나” 만을 반복하였다.

이에 상담원이 “그럼 주인이 따로 있어요?” 라고 하자 골목 안쪽을 가리키며 “성당 지나서 차 있는 곳” 라고 하였다.

옆에서 함께 노점을 하시던 분이 “주인이 따로 있어서 하루에 100단을 갖고 나와서 정해진 값을 받고 팔아야 해. 돈이 안 맞으면 혼나고 팔아 봤자 돈도 못 벌면서 쪼쪼” 라고 하였으며 주변 다른 상인들도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주인한테 혼난다. 제값 다 주고 사라.” 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

현장조사를 통해 학대가 확인하였지만 이후 분리할 공간을 찾지 못했다. 학대피해장애인쉼터가 당시에 경기도에 4인 정원의 1개소가 운영중이었고 여성피해장애인만 입소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남성 피해자는 입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고 주변분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 한분께서 ” 네가 작년 12월에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소도 이곳으로 옮기고 국가에서 돈도 나오는데 주인 놈이 다 챙겨 먹어. 주인놈이 자기가 삼촌이

라고한다 “라고 했고 실제 지역사회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의 무관심에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야채가게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을 통해 피해자가 가출을 여러번 했었으며 그때마다 실종신고를 하여 핸드폰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행위자1에게 인계하였고, 고향집에 내려가 있으면 데리고 오기를 반복한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 행위자1이 매우 폭력적이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칼을 들고 나오고 의자로 부인을 폭행하거나해서 주변인들이 행위자1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다른 일자리를 구해 줄테니 도망가라는 주변지인들의 이야기를 행위자1이 알게되어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신고가 접수되고 한달여기간 동안 긴급분리할 공간을 찾지 못해 애태워하면서 계속 피해자와 만나고 주변지인분들에게 기관의 지원계획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다.

이후 주변지인에게서 행위자1 부부가 2~3일간 지방에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긴급분리시 폭력적인 행위자1와 마찰이 생길 경우 피해자가 위축되어 분리를 거부할 수도 있기에 행위자1이 없을 때 긴급분리를 하기로 하였다.

두팀으로 나누어서 한팀은 피해자와 만나 긴급분리에 대한 설명과 동의과정을 거쳤고 한팀은 주변상인들을 만나 추가 진술을 확보하였다.

갈곳을 마련하고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담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는 긴급분리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피해자의 긴급분리 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적장애가 있으시고 갑자기 낯선 사람과 낯선 공간에 약간은 어색해하기도 하지만 행위자1을 안만나도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는 기뻐했다. 상담원들은 긴급분리 공간을 어떻게 마련해야할지 실제 무척 난감했다. 체험홈을 긴급히 알아보았지만 실제 바로 입소 가능한 공간은 없었고 마지막 방법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남성활동가 분에서 부탁을 하였다. 임시주거공간으로 남성활동가의 집이 선택되었다.

2. 긴급분리에서 체험홈 입주 등 지역자원의 연계

현재 학대피해장애인을 긴급분리할 수 있는 곳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거주시설만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설치되어 있는 학대피해장애인쉼터는 현재 정원이 4인으로 2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정원 초과상태라서 실제 입소는 어렵다.

거주시설은 ” 인권침해상황 발생 시 구제조치가 필요한 이용자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무연고가 된 이용자 등을 긴급이용자 “로 규정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가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이 피해자를 거주시설로 입소하기에는 적응의 어려움도 있고 당사자가 거부하

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긴급분리 되기는 어렵다.

본 기관은 거주시설이 아닌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립지원을 위해 체험홈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체험홈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가운데 지역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 "으로 사업대상자를 정하고 있어 학대피해장애인이 입주하기에는 지역탈시설 대상자 우선이라는 관할 지자체의 반대, 입주심사위원회 등의 입주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있어 긴급을 요하는 학대피해장애인이 입주하고 자립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긴급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지만 학대피해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체험홈에 입주하여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기까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또한 체험홈에서 재가학대피해장애인의 입주를 망설이게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A씨의 경우 5월 17일 긴급분리 후 지역사회의 체험홈을 5월 22일 입주할 수 있었다. 체험홈을 운영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시와 협의하여 빠른 지원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A씨의 경우 당시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장애재심사를 받아야하고 당시 지적2급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장애재심사 탈락은 바로 장애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자립지원에 있어 경제적인 부분은 중요하기에 체험홈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고 자체 인력으로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과정에서 A씨가 길을 잃어 실종되기도 하고 함께 거주하는 입주인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 갈등을 겪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양기관의 지속적인 사례회의와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권익옹호기관만의 힘이 아닌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지역 체험홈과 지속적으로 서로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례지원과정에 대한 공유하고 소통할 때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3. 행위자1에 대한 형사고소 및 소송등 법률지원

행위자1을 처벌하기 위한 고소를 진행하기 앞서 피해자명의로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임금 등의 수령사실과 주변상인들이 이야기한 기초생활수급비 횡령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중 기초생활수급비는 사업주가 아닌 고향의 어머니가 통장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소 및 소송

가. 학대행위자1과 행위자1의 부인에 대한 1차 고소

- 접수일시 : 2017년 5월 22일
- 접수처 : 고양경찰서

○ 고소내용 : 피해자는 2010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부터 행위자1이 운영하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야채가게에서 아침 6시부터 해당 상점의 정리 및 문열기, 야채가게의 물품배달, 지방으로 야채를 수매하러 갈 경우 동행하여 야채 수확을 하는 일등을 계속해왔다. 또한 오전에 야채를 수레에 가게에서 싣고 나가 다 팔면 가게로 돌아와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물건을 싣고 나가 물건을 다 팔때까지 노점을 하고 노점을 마치면 야채가게로 돌아와 가게 물건 정리 후 문을 닫는 노동을 오후 9시~10시경까지 쉬는 날없이 매일 계속해왔다.

피해자는 야채가게안에 주방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지내며, 난방장치가 있으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사용하지 못하고, 겨우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뎠다. 또한 한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았으며 화장실이 건물 외부에 있었다.

행위자1은 피해자가 배달을 잘못하거나, 노점에서 판매한 수입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매우 심한 욕설과 구타를 행하였으며, 행위자1의 부인도 욕설과 구타를 함께 하였다. 또한 행위자1은 야채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칼로 찔러 상처를 내고, 야채가게 건물 뒤에서 가슴을 발로 짓밟고 때리는 등 물리적 폭력을 가하였다. 또한 행위자1은 피해자의 신체에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행위자1은 피해자의 통장으로 2010년 1월부터 매월 20만원을 7회, 2015년 9월에 2,000,000원, 2015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매월 20만원을 20회입금하였으며 입금총액은 7,400,000원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월급이나 용돈이 하나도 없어서 옷과 필요한 물품들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갖다주는 것으로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새벽6시부터 이어지는 강제노동에 힘들어서 탈출을 시도하여 고향 예산으로 갔지만, 고향에 거주하는 어머니 최○○ 역시 지적장애인으로 행위자1이 찾아와서 협박하고 강요하면 다시 야채가게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 행위자1의 혐의 : 장애인복지법 위반(제59조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제32조 4항)
형법상 준사기(형법 제348조)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나. 행위자1에 대한 추가 고소

행위자1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의 핸드폰 사용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개통하고자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위자1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드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고소 진행하였다.

- 일시 : 2017년 7월 10일
- 접수처 : 고양경찰서
- 행위자1의 혐의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주민등록법/ 정보통신법 위반

○ 지원과정 : 두 고소사건은 병합하여 진행되었고 경찰조사 과정에도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였다. 행위자1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주변지인들이 경찰이나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처음에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진술서의 작성자가 직접 폭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며 직접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주변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경찰서에 출석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지인의 참고인 출석시에도 함께 이동지원과 조서 작성시 가명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참고인 신변안전을 위해 노력하였다.

사건 초기에 피해자의 분리에 앞서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이후 사건 지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공유 또한 주변지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와 증인으로 참석한 주변지인들의 행위자1의 상습적인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이를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2017.9.15. 고양경찰서는 행위자1에 대해서만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사전자기기록위반 및 행사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처벌규정이 없어 각하하였고 준사기는 민사사안으로 불기소하였다.
또한 행위자1인 부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각하하였다.

이후 검사실에서 채수사 지휘가 내려오고 경찰은 고향을 방문하여 다시 수사하는 듯 하였지만 결국 검찰은 2017.12.14. 장애인복지법 위반등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하였다. 이에 2018.01.03.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기관에서 배포하였고 2018.01.04. 공소장접수되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행위자1은 모든 혐의 부인하며 가족과 친인척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피해자를 돌보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검사에 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피해자의 장애특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행위자1의 혐의부인으로 인해 재판부는 또 증인을 요청하였고 주변지인들은 또 다시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행히 최초 신고자가 폭행을 목격한 내용이 증언이 되고, 주변지인들도 할머니도 저렇게 용기를 내는 데 우리가 잘못생각했다고 하며 증인으로 참석해 주셨다.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기소된 준사기가 명확했기에 검사실에 추가 기소를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수사담당이 아니고 공판담당이여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 결과 : 2018.10.18.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되었다.

이후 검사와 행위자1 모두 항고하여 2심 재판 진행하였으나 2019.10.18 항소기각판결 선고하였다.

(2) 형법상 특수상해죄 및 준사기 위반 추가 고소 및 소송

○ 일시 : 2018년 8월 07일

○ 접수처 : 고양경찰서

○ 행위자의 혐의 : 행위자1은 특수상해죄, 행위자1과 부인은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 고소내용 :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행위자1이 휘두른 칼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피해자의 상처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소송에서 진행된 법정증언을 바탕으로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녹취록을 첨부하여 고소하였다

○ 지원과정 : 피해자 A씨가 주장하는 상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주변 상인들에게도 탐문하였으나 누구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A씨는 당시 병원진료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을 청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확인이 불가하였다.

A씨는 당시 신분증과 통장을 행위자1이 갖고있다고 했기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아 의료보험에 등재하지 않고 진료할 가능성도 있어 주변 정형외과, 내과 등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당시 진료받았다고 기억하는 병원이 있었으나 병원은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여 당시의 진료했던 사람은 없었고 혹시나 이사간 곳으로도 연락을 취했으나 확인이 불가하였다. 당사자가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상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를 확인해 줄 증인과 기록이 없어 특수상해죄는 결국 불기소처분되었다.

준사기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재판 증인의 발언 내용 중 행위자1이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월급도 주겠다 “는 녹취록을 발급받아 입증자료로 제출하고, 조사과정에서 진술녹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정을 지원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증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행위자1과 부인의 퇴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진술을 중단되는 등 재판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시 법정증언을 해야하는 주변지인들도 피로도를 호소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 없게 해야한다고 기관 상담원에게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다.

○ 결과 : 2020.2.18. 준사기,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행위자1은 징역 1년6월, 행위자1의 부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에 편취액 1억5천여만원 인정되었다. 그러나 행위자1이 투병중임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2020.2.20. 피고인측 항고하여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이다.

행위자1에 대한 1차 재판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이 500만원으로 감액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기관 상담원들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1차 정식재판을 통해 준수사기 내용이 밝혀졌고 이를 다시 고소하면서 행위자1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3)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및 소송

가. 노동부 진정

- 일 시 : 2017년 6월 29일
- 접수처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내 용 : 피진정인인 행위자1은 피해자(지적장애인)에게 강제근로를 시켰고 또한 최저임금에 현저히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 지원과정: 진정은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의 노무사님이 대리하여 진행하였다. 근로감독관이 근무기간 특정과 근무시간 특정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근무시기를 특정하는 등 다양한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고 주변상인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모두 인정되었다. 근로감독관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행위자1이 거부하여 기소되었다. 재판과정에서도 근무시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여 일부 수정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혹시나 행위자1를 마주치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였고 여성인 상담원과만 출석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지역남성활동가와 함께 출석하기도 하였다.

○ 결과 : 2019.3.22. 체불임금 83백여만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300만원 선고되었다.

근로기준법에도 강제근로에 대한 규정이 있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실종신고내역을 제출했음에도 감금, 폭행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위해서 노동부 진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법체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인식개선과 조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4) 임금청구 민사소송 제기

가. 민사소송

- 진행과정 : 근로기준법 위반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과 지연이자 1억3천여만에 대한 청구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소송구조를 통해 진행하였다.
- 결과 : 2019.10 승소판결

나. 민사소송에 따른 재산명시 및 추심 진행

○ 진행과정 : 1심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은행과 유체동산 등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였고 3개 은행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3개은행 통장

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진행하여 18백여만원 징수하였다. 징수 후 법원에 신고절차도 진행하였다.

2020.10. 행위자1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통장에 대한 해제요청과 함께 합의의사를 밝혀와 현재 위 사항도 법률구조공단에 구조요청하여 진행중이다.

다. 소액채당금 신청

○ 재판 판결문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소액채당금 신청하여 1천만원수령하였다.

라. 행위자1의 항소에 따른 2심진행

○ 진행과정 : 행위1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재판부는 조정에 회부하였다.

○ 결과 : 기추심금액과 소액채당금 수령금액을 제외한 임금 일부 지급으로 조정 성립하여 합의금 일부 수령하였고 최종 합의금은 2021.10 수령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합의금이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4. 명의도용에 따른 지원

A씨에게는 명의도용 사건이 2014년 알 수 없는 사람(행위자2)에 의해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양도양수에 따른 세금체납으로 인한 것과 1997년 알 수 없는 사람(행위자3)에 의해 차량구매를 위한 대출로 인한 채무 2개이다

(1) 영업장 양수에 따른 명의도용(2014)

가. 인지과정

2014년 세금체납 사건에 대한 인지는 A씨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무선이 동통신결제단말기 11대가 개통되었으며 체납액이 70여만원이며 세금 체납이 있어 개통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통해서이다.

이후 세금체납관련하여 영등포세무서/강남세무서 방문하여 금액 확인하였으며 2014.2월부터 3월사이에 영등포구 소재의 유흥주점의 사업자 지위승계와 강남구 소재의 일반음식점을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하나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통장 거래내역 확인하였다.

영등포구청/강남구청 방문하여 사업자 지위승계 및 공동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발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사건 진행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서울남부검찰청을 통해 피해자의 고소 관련 서류 발급하였다. 이 모든 과정은 A씨와 동행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나. 지원 과정

① 통장압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급비 수령 통장이 충청남도 예산군 00은행으로부터 2017.6.26.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피해자는 갑작스런 압류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영등포세무서에 현재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소명하고 은행과 협의하여 다음 날 압류 일시 해제가 되었고 2017.6.29. 압류통장의 일시해제로 통장잔액 인출 및 압류방지통장 개설하도록 체험홈에 공유하였다.

② 단말기 명의도용 신고 및 체납액 납부처리

무선이동통신결제단말기의 개설상황을 확인하고자 가입신청서등을 발급받아 개통대리점과 연락시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고 구로구와 용산구등 사업장소재지를 현장방문 하였으나 폐업하였거나 대리점 소재 확인 불가하였다

발급받은 가입신청서의 서명등이 모두 피해자의 서명과 일치하지 않음 확인하고

2018.03. 무선이동통신결제단말기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통신사를 대상으로 내용증명 발송 하였으나 2018.05 대리점을 통한 명의도용신고를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2018.05 명의도용신고를 하자 그동안 연락되지 않던 개통대리점이 연락을 해왔으며

2018.08 무선이동통신결제단말기 체납요금에 대해 대리점측에서 체납금액 납부하며 체납액은 소멸되었다.

③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소

구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위승계서 등을 바탕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유흥주점 전 명의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전명의인도 피해자라고 하며 불기소처분되었다.

일반음식점 전명의인의 소재지가 남양주시임에 따라 남양주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 이는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명의인과 만나 확인한 결과 본인은 무가지에 실린 핸드폰개설 내용을 보고 전화했었고 돈을 준다는 말을 믿고 신분증등을 빌려줬고 이후 세금체납되었다는 사실 확인하고 명의에서 빼달라고 했다. 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다.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당시 연락했던 사람들은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는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전명의인 또한 명의대여의 피해자이기에 고소는 취하하였다.

④ 무모한 세금부과무효처분 소송 제기

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부과된 세금은 부과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소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형사고소로는 명의를 도용한 행위자를 찾을 수 없어 세금부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했으나 실제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부과에서 승소를 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가 재산취득을 하지 않으면 5년 소멸시효를 기다리는 것외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는 통장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압류가 된다면 평생을 세금 독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생각한 세금부과 무효처분소송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 A씨만이 아닌 수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익소송이라고 결정했으면서도 패소비용에 대한 부담감으로 채납액이 적은 부가가치세만을 소송제기하기로 하였으며 자문변호사인 강성구 변호사님이 진행해 주셨다.

2019.1.28. 부가가치세 6백여만원에 대한 취소처분하는 조정을 통해 승소

이후 압류통장 해지 절차 진행되고 부가가치세에 의한 부과되었던 지방세 9백여만원도 취소처분에 소멸되었다..

고양세무서에서 2019.8. 종합소득세 채납을 이유로 피해자 통장에 대한 압류 진행하여 고양세무서를 상대로하는 종합소득세 무효확인 소송 제기하였고

2020.3.18. 종합소득세 9천여만원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았다.

(2) 차량구매 대출 채무에 대한 지원

가. 사건인지

피해자의 주소를 이전하고 1년이 지난 2018.6.5. 채무독촉장이 도착하였다며 사무실에 문서를 피해자가 갖고 왔다.

2002년 채권자인 ○○캐피탈에서 피해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주소지가 불명확하여 공시송달로 채권자가 승소한 판결에 따라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이였다.

나. 지원과정

추심업체의 직원 면담을 통해 법원의 재판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자신들도 양수업체라서 정확한 자료는 없고 오직 사건번호만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에 사건번호를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사건자료를 발급하였으며 이외에도 원채권자인 ●●캐피탈이 수원지방법원 광주지원에 제기하였던 민사소송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명의로용의 내용은 1997년 피해자가 차량 구매를 위해 대출하였고 어머니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이였으나 계약서의 서명이 피해자의 서명과 달랐다.

이에 원채권자인 ○○캐피탈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공시송달로 인해 피해자의 방어권이 제약받았다는 내용과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송을 통해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추완항소를 수원지방법원과 양수업체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재판과정에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여 진행하였으며 사건은 민사조정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차량구매를 하거나 대출을 직접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 연대보증인인 어머니 또한 지적장애임을 증명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

하여 피해자명의의 차량이 등록된 점이 없다는 점을 제출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채권자인 ○○캐피탈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채권자의 두 개 소송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55백만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 피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기관과 협의된 내용을 재판부에 이야기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5.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원 및 결혼과정 지원

긴급분리 후 행위자1은 실종신고를 통해 기관에서 긴급분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고향에서 모시고 와 경찰에 또 다시 실종신고를 하는 등 어머니를 통해 피해자를 계속 찾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해자는 양부와 어머니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행위자에게 둘러보낸 행위에 대해 거부감이 강했으며 만남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어머니의 진술이 필요했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충남인권센터와 협조하여 충남 예산의 원가정 방문 2017.8.3. 방문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와 피해자의 수급비 급여관리자인 전이장이 강하게 반발하며 피해자 통장 반환을 거부하며 폭력적인 상황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해당 동사무소에 급여관리 실태 감독요청하고 급여관리자의 부적절한 관리에 대해 급여관리자 교체 요청하였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의 성격상 급여관리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도 마을 전이장은 친인척임을 내세워 어머니의 급여관리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이장에 의해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이에 ○○은행에 이에 대한 강력항의하였다. 그러나 ○○은행은 이후에도 피해자의 통장에 압류가 해제될 때 관계없는 전이장에게 해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이후 자립지원과정에서 어머니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하였고 어머니도 피해자가 야채가게 사장으로부터 욕을 듣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하며 이제는 야채가게에 데려가지 못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후 매년 1회의 정기적인 방문을 지원하고 있다. 이또한 기관의 고민중 하나이다. 원가족과의 관계회복은 필요한 일이고 지적장애 특성상 가족을 만날 방법을 지원해야하나 기관에서 감당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피해자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후 기관에서 지원계획을 설명하고 세금등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다

이후 결혼을 위한 상견례가 2018. 7. 고향에서 진행되었고 기관에서 이동지원을 하고 상견례에 참석하는 등 원가족과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였다.

6. 국가배상소송 검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방문하여 수사팀과 면담과정에서 A씨가 자주 가출을 하여 야채가게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한 A씨도 2014년 명의도용과정을 설명하며 “힘들어서 도망나와 영등포역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술을 사주겠다고 했으며 따라갔더니 주민등록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나중에 노숙인 시설에서 고향에 데려다 주었고 사업주가 데리러 왔다. 가기 싫다고 했는데 자꾸만 가져고 했다” 라는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경찰서에 A씨의 실종기록 발급을 신청하였다.

(1) 행위자1의 실종신고 및 경찰의 조치

행위자1은 2014. 2.경부터 2016. 10.경까지 5차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그 실종신고 및 경찰의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4. 2. 10. 실종신고 및 처리내역

2014. 1. 28. 11:00경 피해자는 처음으로 야채가게를 탈출하였다. 약 2주 후인 2014. 2. 10. 행위자1은 경찰서에 A씨에 대하여 실종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상기 미귀가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신고자의 업소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고 일을 배우던 중 신고자가 미귀가자가 계산을 하지 못하는 점을 우려하여 장사를 못하게 하자 2014. 1. 28. 11:00경 휴대폰과 가방을 두고 나가버린 것임’ 이라고 하였다.

경찰은 ‘신고자담문, 통신조회, 노숙자시설 등 탐문’ 을 통해 같은 해 3. 6. 19:30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고향 행정청을 통해 고향으로 인계되었다.

② 2015. 8. 7. 실종신고 및 처리내역

그 다음 해인 2015. 7. 27. A씨는 다시 이 사건 야채가게를 탈출하였습니다. 이에 같은 해 8. 7. 행위자1은 경찰청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 신고 내용은 ‘가게에 있다 말없이 나간 후 미귀가’ 였다.

경찰은 수사 끝에 엿새 후인 같은 해 8. 13. A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경찰에게 ‘현재 지인과 함께 북한산에 있고 신고자에게 돌아가기 싫다’ 고 말했다. 원고의 지인이 행위자1과 통화하겠다고 하여, 경찰은 행위자1에게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실종신고를 해제하였다.

③ 2016. 3. 9. 실종신고 및 처리내역

그 다음 해인 2016. 3. 9. A씨는 또 다시 야채가게를 탈출하였다. 행위자1은 같은 날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틀 후인 같은 해 3. 11. 18:20 A씨의 휴대폰 번호의 위치값을 확인하여 수원역 근처에서 A씨를 발견하였다.

파출소에서 미귀가자 확인 및 귀가조치라고 기록되어 있다.

④ 2016. 8. 16. 실종신고 및 처리내역

A씨는 2016. 8. 16.경에도 야채가게를 탈출하였다. 행위자1은 8. 16. 실종신고를 하였다. 실종신고 다음 날 행위자1은 A씨가 서울 역촌동에 소재한 지인 집에 있는 것을 알아내어 A씨를 이 사건 야채가게로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경찰서에 연락하여 8. 18. 9:33경 실종신고를 해제하였다.

⑤ 2016. 10. 3. 실종신고 및 처리내역

같은 해 10. 1. 피해자는 또 다시 야채가게를 탈출하였습니다. 행위자1은 이틀 후인 10. 3. 고양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다. 약 2주가 지난 2016. 10. 19. 9:00경 행위자1은 고향에 내려가 있던 A씨를 찾아내어 야채가게로 데리고 돌아와 경찰서에 실종신고 해제를 요청하였다. 처리내역에는 “가출인이 고향 집 예산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자가 주거지로 데려와 해제 요청함” 이라고 적혀 있다.

(2) 법률검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이라 합니다)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아동등” 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또는 정신장애인” 이 포함된다(제2조 제1호 나목). “실종아동등” 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을 말한다(같은 조 제2호). 여기서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호).

실종아동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는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정하고 있다.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제1호),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2호),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제4호),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5호)이다.

위 조항들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실종아동등을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혹여 그 보호자에게 실종아동 등을 인도하여서는 안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보호자가 폭력 또는 학대 행위자이거나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실종아동 등을 보호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 피해를 지속·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연히 실종아동 등을 보호자에게 인도하거나 그 소재지를 알려주어 보호자로 하여금 실종아동 등을 찾도록 하였다면, 이는 실종아동법을 위반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행위자1은 2014. 2. 10. 첫 번째 실종신고를 할 때부터 피해자가 2급의 지적장애인임을 밝혔으므로, 경찰공무원은 A씨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또한, 행위자1은 자신이 A씨의 친족이 아니라 A씨의 고용주라는 사실도 밝혔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3회 이상’의 가출경력이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A씨를 발견한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사업주가 적절한 보호자가 아니어서 원고의 가출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경찰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고 A씨를 행위자1에게 인도하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행위자1에게 알려주었다.

(3) 소송 미제기 사유

공익법인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학계 형법 교수등 다양한 전문가에게 법률검토를 하였으나 A씨와의 면담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이 A씨를 행위자1에게 인계한 상황에 대한 절차와 과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라는 서류에는 A씨가 행위자1에게 가기 싫다는 기록은 있으나 경찰이 행위자1에게 직접 A씨를 인계하였다는 내용이 없어 경찰의 직무집행 위반을 법률적으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주변지인에 의한 관할행정청에 피해자에 대한 신고와 경찰이 힘들어서 탈출한 피해자를 끊임없이 행위자에게 돌려보낸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방임이라 판단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소송제기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패소비용을 고민해야하는 기관의 예산 사용의 어려움 또한 적극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또 하나의 원인이기에 이에 대한 고민 또한 깊다.

IV. 피해자지원과정에서 권익옹호기관의 역할

피해장애인 A씨에 대한 지원은 2017년 3월 27일 시작하여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원의 한계가 있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3년이 넘도록 진행할 수 있고 성과를 낼수 있었던 요인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 첫째, 접수 초기 빠른 진행보다 주변 탐문과 주변지인들과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신뢰를 얻은 신중한 접근
- 둘째, 시설입소나 고향으로의 복귀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립지원과 그과정에서의 지역 장애인단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공유
- 셋째, 피해자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권익옹호기관
- 넷째,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파악된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원과정에서 쌓여간 신뢰
- 다섯,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인지하고 사실확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
- 여섯, 지원과정에서의 법률구조공단, 지역 노동단체의 노무사, 지역활동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자원의 활용 등이라 생각한다.

물론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 포기하지 않은 피해자 A씨이었다. 증거를 수집하지 못해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지원방법을 찾지 못해 놓고 싶을 때에도 A씨는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 했고 “사장을 감옥에서 못나오게 하고 싶다”, 원가족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엄마 보러 가고 싶다” 등 본인의 욕구를 명확히 표현해 주셨고 자립을 통해 야학의 학생으로, 자립생활센테의 회원으로 권익옹호활동을 진행하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결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A씨에 변화하는 모습에 힘입어 지원을 계속 할 수 있었다.

준사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가 행위자로부터 벗어난지 만2년이 지났고 차폐막으로 행위자를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와 같은 재판정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되고 힘들어 해서 결국 재판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행위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였고 이후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 참고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3년동안이나 지속된 재판으로 인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했던 고통스런 재판과정에도 충실히 임해주신 A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권익옹호활동을 하면서 당사자의 거부로, 또는 당사자를 지원할 자원을 찾지 못해서, 또는 당사자와 지원기관의 의견이 달라서, 지원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아 인력이 부족하여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지원이 완결되지 못한 채 종결되는 수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때면 사회적 자원과 제도의 부족함에 분노를 하기도 하고 정책적 미비에 대해 슬퍼하기도 한다.

하지만 권익옹호활동을 위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을 갖고 있어도 피해자 회복지원은 권익옹호기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A씨의 사례에서 보듯 지역의 체험홈, 장애인야학, 자립생활센터, 교회, 복지관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할 수 있었기에 A씨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었다.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권익옹호기관이 단순히 법률지원을 통해 피해회복을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가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자의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역단체와 소통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지역단체에 비해 법적인 권한과 물적, 인적 자원을 좀 더 갖고 있는 권익옹호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이후 피해자의 자립지원과정에서의 다른 단체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해주신 지역 단체와 강성구 변호사님을 비롯한 지역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앞으로도 꾸준히 장애인의 자립과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 연대하자고 제안드린다.

발 표 2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사례보고

[법률사무소 공청 변호사 강 성 구]

I. 조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및 결과

가. 명의도용(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자 A씨에게 부과된 2014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취소

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90377호 사건,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37,960원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영등포세무서장

다.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754호 사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당초결정분 71,776,360원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동고양세무서장

II. 사건의 개요

1. 피해사실 개관

- 피해자 A씨(40대, 중증 지적장애)
- 2010.경부터 2017. 5. 17.경까지 고양시 소재 야채도소매업체(상호 ‘푸○○ ○○’)에서 강제 노역을 당함
- 위 업체에서 강제노역 중 일시 탈출하였던 시기로 보이는 2014. 2~3.경 영등포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 위 명의도용(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로 인하여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유흥주점(상호 ‘촬○○’) 및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일반음식점(상호 ‘신○○’)의 대표자로 각 사업자등록이 신청됨
- 여의도동 소재 유흥주점의 경우 2014. 2. 28.부터 같은 해 3. 28.까지, 강남구 대치동 소재 일반음식점의 경우 2014. 3. 10.경부터 같은 해 4. 14.까지 각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됨

- 2014. 9. 3.경 유흥주점(상호 ‘찰○○’)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에 대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영등포세무서로부터 6,437,960원의 부과처분결정이 있었음
- 2016. 7. 5. 유흥주점(상호 ‘찰○○’) 및 일반음식점(상호 ‘신○○’)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에 대한 2014. 귀속 종합소득세로 동고양세무서로부터 71,776,360원의 부과처분결정이 있었음
- 2017. 6. 9. 당시까지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액 합계(가산세 포함)가 총 91,645,840원에 달함

2. 피해접수 및 조사

- 2017. 5.경 (구)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현)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강제노역 등에 대한 피해사실이 접수되어서 2017. 5. 17.경 위 인권센터에 의하여 긴급분리 조치되어 의정부 소재 임시 보호시설에서 생활
-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사례회의 실시
-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가 국세청에 의하여 채권압류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 등에서 조세부과처분이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함
- 피해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피해로 보아서 이 부분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Ⅲ. 권리구제를 위한 추진 절차 내용 및 결과

1.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가. 소 제기 당시 상황

- 영등포세무서에 의한 2014. 9. 3.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경우 2014. 9. 11. 피해자의 동생(시각장애 1급)이 본인의 주소지인 충남 예산에서 고지서 송달받음
- 동고양세무서에 의한 2016. 7. 5.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2016. 7. 6. 피해자에 대한 강제노역 사건의 가해자인 행위자1이 고지서를 송달받음
- 따라서 당시 피해자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세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제기)을 제기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 방법을 도모하기로 결정

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 등 관련구제절차의 진행 및 결과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2017. 12.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90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19. 1. 25.자 조정권고안에 따라 2019. 3. 2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과 관련하여

- 2019. 10. 25.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7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제기
- 2020. 6. 15.자 조정권고안에 따라 2020. 2020. 7. 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2. 2018. 6. 국민권익위원회에의 고충민원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에의 고충민원신청을 통하여 국세청에의 직권취소를 권고하여 줄 것을 요청
- 위원회의 조사결과 명의도용을 당한 영업소의 실질사업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위원회 조사결과 자료를 토대로 실질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

3. 2018. 10. 서울영등포경찰서에의 형사 고소장 제출

- 명의도용과 관련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실질사업주 고소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실질사업주 및 도용 당시의 상황 확인

IV. 문제점 및 대안

장애인 학대 피해와 관련한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의 마련 및 적극적인 접근관점으로서의 인식 개선

사례증언

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례의 당사자입니다.

저는 야채가게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장가를 보내주고, 집도 사주고,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그 말만 믿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리어카에서 야채를 판매하고, 야채를 수확하러 지방에 가거나 새벽청과물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오기도 하고, 야채를 배달하고, 가게청소와 물건 정리입니다.

배달일 중에서 소금가마니를 배달하는 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장할때는 배추도 배달해야했는데 계단으로 짐을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달은 주문한 아주머니들이 저와 함께 가거나 아니면 주소를 주면 찾아가는 거였는데 배달을 잘못하면 사장님은 욕을 하고 때렸습니다.

저는 야채가게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잤고, 야채를 다 팔아야만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사장님과 사모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방이 너무 추워 난로를 키려고 했지만, 사모님은 가게에 불이 난다고 하며 켜지 못하게 소리를 질렀고, 따듯한 물이 나오지 않아 찬물로 씻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야채가게에 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때리는 것과 노점상 단속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인권센터 직원을 처음 만났을 때는 놀랐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남자가 가게로 찾아와 파를 사가면서 자꾸 가격을 깎아달라고 하니깐요. 이상한 남자는 저에게 같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상한 남자는 인권센터에서 나왔다고 하며 누군가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인권센터에서 온 남자는 야채가게에 나와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도움을 받아 가게에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야채가게에서 나온 뒤 인권센터에서는 저를 소장님 집에서 며칠 자게 하고 체험홈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야채가게 사장님과 사모님을 별주기 위해서 경찰서랑 법원을 자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야채가게 사장님과 사모님이 벌을 받게 되어 돈도 조금 돌려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몸이 아프다며 감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이 아쉽습니다.

요즘은 힘든 것이 없습니다. 아내와 장모님, 장인어른과 사는 게 좋습니다.

가게에서 나와서 제일 좋은 일은 아내를 만나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 외출이라도 하면 금방 문자나 전화를 하여 저를 찾을 만큼 저를 생각합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보치아를 나가고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엄마와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장님이 엄마 집 동네에 찾아와 엄마를 괴롭히고 저를 괴롭힐까봐 엄마 집에 자주 못갔는데 이제는 집에도 가고 이장님에게 박카스도 사다 드렸습니다. 야채가게에 있었을 때는 한 번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저를 위해 말을 해주신 분식집 사장님, 옷가게 사장님 그리고 인권센터에 신고해주었던 할머니께 고맙습니다. 뭐라도 사다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사시는지 찾아가기가 어렵네요.

지금도 좋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인권센터 직원들에게 썩스럽지만, 박카스를 사서 주고 싶고 요리도 해줄테니 집에 놀러 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사례증언문은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재구성 되었습니다.

※ 참고사항 : 본 기관은 2016년에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로 시작하여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2019년에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란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발 표 Part 2.

발 표 3

부족한 지원체계, 그 빈곳을 채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학대피해장애인 지원과정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김 성 연]

I. 들어가는 이야기

- 우리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든 이유 -

2011년 9월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2005년 광주의 한 청각장애 학교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행과 학대 사건이 6년이 지나서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실로 이 영화의 힘은 대단했다. 아동,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폐지와 대폭적인 형량 강화가 이루어졌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전면 재수사를 통해 학교 관계자 등이 법의 심판대에 섰으며,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가 취소되면서 시설도 모두 폐쇄되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일부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알게 되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체계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6년 동안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에 호소해온 인화학교 피해자들처럼 영화로 만들어지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의 지원체계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부터 장애인의 차별, 인권침해, 학대 등에 대한 권리옹호체계 구축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이게 되면서,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관련시스템을 만들어 온 미국의 P&A (Protection and Advocacy)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장애인 권리옹호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2014년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철수 의원)의 발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 관련한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이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었던 복지부는 새로운 독립법의 제정을 반대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대한 내용 만을 일부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급하게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은 장애인의 권리옹호 체계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채 매우 형식적인 내용만을 담아내었고, 이에 독립법안을 준비하던 장애인단체와 법률가들의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에 대한 부분은 2017년으로 시행을 유예 시키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렇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를 기다리고 있던 2014년 또 다른 장애인학대사건이 다시금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바로 염전노예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이다. 신안군의 섬지역에서 다수의 지적장애인이 섬에 갇힌 채 염전에서 일하면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사건으로 당시 직업소개소와 염전주인들이 장애인을 약취 유인해서 실제로 몸값을 주고 사고팔며,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일을 시켜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렇게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넘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삼엄한 감시 속에서 어렵사리 구해달라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기 전까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지역파출소 경찰은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가해자에게 잡아다 주었고, 지자체는 몇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신고를 모두 묵살 하였다.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노동청은 장애인의 노동에는 관심 갖지 않은 채 염전에서 누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들었다. 국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옹호체계인 군청과 면사무소도, 경찰서도, 노동청도 아무도 장애인의 권리에는 관심이 없기에 아무도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II.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

1. 경기북부권익옹호기관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

현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기관을 총괄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18개 기관(경기도의 경우 2개소 설치)이 설치되어 있다.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4~5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렇게 지자체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넓은 지역을 적은 인원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어려움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권리옹호에 대한 대응 활동은 왜 우리가 이 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체계를 구축해야 했는가 라는 처음의 고민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고민의 배경에는 기관을 설치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설치와 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자체에 맡겨 놓은 채 마치 지자체의 산하기관처럼 운영되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보건복지

부의 책임이 가장 클 것이다.

그리고 이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인지, 왜 만들어졌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지역 내에 흔하게 있는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정도로 생각하며 권리옹호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 최근 경북지역에 00광역시에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였다. 물론, 현재 법안에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권리옹호기관의 역할을 생각할 때 가장 잦은 장애인학대 가해공간인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곳에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결국 학대하는 곳에 학대를 조사하고 대응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처음 설치된 2017년 이후로 3년여가 지났다. 장애인인권센터라는 지역 내 장애인인권기관이 전신으로 있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장애인권리옹호와 관련한 기관의 역사는 어느덧 10년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긴 시간속에서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도 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만 하는지...

이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번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2. 할 수 있는 최대한, 피해당사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다.

우리가 인화원 사건도 염전노예 사건도 해결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관련된 지자체 경찰서 등의 공무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의 범위는 작게 규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는 것으로 정해놓고 딱 거기까지만 했기 때문이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으로, 일하던 장애인이 나갔다고 하니까 찾아주는 것으로, 노동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그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긴 시간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없었던 것이다.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더욱이 새로운 상담이 계속 들어오는 기관에서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긴 시간 끈질기게 놓치지 않고 진행해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의 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아마 피해장애인의 이야기를 카운팅하는 하나의 사례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의 인생이라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기관을 찾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나의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일 것이다.

피해자 A씨의 사례는 장애인학대사건의 종합세트이다. 마치 여러 사람의 사례를 한곳에 합쳐 놓은 것처럼 장애인학대로 이어지는 장애인의 삶이 그대로 한편의 영화처럼 드러나고 있다. 처

음에 잇을만하면 발견되는 강제노역사건으로 시작된 사례는 이후 사업장 운영의 명의도용사건으로 농촌지역의 수급관리자에 대한 경제적착취 사건으로 그 속에 무선이동통신단말기 명의도용 개통까지 어느것 하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들에 의해 시간이 흘러왔다. 그리고 3년간의 긴 싸움을 거쳐 이제야 가족을 이루고 진정 자신을 위한 삶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피해자 A씨가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찾기까지의 과정 역시 처음 시작은 타인들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신고자는 권익옹호기관으로 오기 전까지 구청에도 경찰서에도 모 방송사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알렸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앞서 이야기 했던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직원도 경찰도 자신들의 자리에서 이야기만 들을 뿐 제대로 피해자를 찾아와보지도 않았다. 연락을 받았지만 적극적인 확인까지는 자신들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이 유일하게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며칠씩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았다. 제보나 신고를 받는 곳이 구청도 경찰서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도 모두 있는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이지만, 다른 곳들이 무심하게 ‘네,네.’ 하면서 신고만 받을 때 피해자를 찾아 나서고 주변을 살피고 자세하게 상황을 확인한 것은 권익옹호기관이었다. 현실의 경찰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찰처럼 피해자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 곳은 여기뿐이었다.

이후에 대응도 마찬가지이다. 일단 지적장애인이었던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를 그 사람의 인지 정도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이 매우 신중하게 듣고 검토하였다. 이후에 다양한 피해 상황이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편안한 상황으로 라포를 형성했던 과정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진다.

3년여동안 4-5차례의 고소·고발과, 3차례 이상의 소송과, 노동부 진정까지 법제도적 절차를 밟는 것에서부터 피해당사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이후 가족과의 관계를 살피는 것까지 피해당사자를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졌다. 마치 여러개의 사건을 합쳐놓은 듯한 피해 사실들은 매 순간순간 가능성 여부를 따져 봐야했고, 당사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려고 했으며, 주변에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결이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제시 할 때도 피해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 시도했다.

3.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명의도용 체납세금 1억원 무효확인소송

이번 사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가 명의도용으로 업체의 바지사장이 되면서 발생한 체납 세금에 대한 소송이다. 노동착취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사건이 어느 순간 명의도용에 의한 세금 체납사건으로 바뀌어 있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도장으로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되었고, 이렇게 사업주가 된 장애인은 어느 순간 영업장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 1억여원의 세금에 대한 체납자가 되어있었다. 단돈 100만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장애인에게 1억은 너무나 큰 돈이었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세금부과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 부정적이었고 승소 사례가 없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피해당사자가 새롭게 찾아가는 삶속에서 이 세금은 평생 따라다닐 족쇄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아마 기관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안된다는 이야기보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집중하면서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승소하여 1억원의 세금에 대한 취소처분을 받아냈다. 주변 모두가 놀랐고, 기관의 끈질긴 시도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억울하게 명의가 도용되어 바지사장이 되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렇게 체납되는 세금의 굴레에서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게 되었다. 아마 안된다는 이야기만 듣고 피해당사자의 어려운 입장을 보지 못했다면 절대 시도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4. 부족한 지원체계, 그래서 더욱 필요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지역사회에 부족한 지원체계였다. 노동착취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해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많은 기관들이 갈 곳이 없어서 피해장애인을 다시 돌려보내거나 아예 구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례에서 기관은 고민 끝에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체험홈 등 기존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에 피해장애인이 우선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갔다. 이후에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큰 그림을 함께 그리며 지속적으로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을 함께하였다. 누군가에게 구속되고 억압된 환경에서 생활하던 피해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환경을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도록 두 지역기관이 함께 한 것이다.

각종 법 제도적 지원체계 역시 부족하긴 마찬가지이다. 경찰고소와 소송진행, 임금체불대응 등에서 피해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는 전혀 없었다. 기관에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고 지역 노동단체의 노무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자문변호사에게 무료 수임을 부탁하면서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법절차의 지원체계들을 기관이 스스로 찾아서 하나씩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제로 만들어가고 진행해나가야 했다.

이후의 자립지원 역시 탈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자립정착금이나 주택지원 등의 체계가 만들어져 있을 뿐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다 학대 등의 사건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경우 돈도 집도 인력지원도 모두 하나씩 찾아가고 끼워 맞추며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족한 지원체계는 결국 학대사건으로 분리와 정착이 필요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자꾸 시설을 밀어 넣고 있다.

결국, 이렇게 부족한 지원체계 안에서 이 모든 절차들과 자원들을 찾아내고 피해장애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 기관과 상담가의 몫이 되어버린다.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권익옹호기관은 그 짜여진 체계를 피해장애인이 잘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살펴보기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긴급분리조차도 제대로 지원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기관이 얼마만큼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런 체계들을 구상하고 찾아내고 적용하는지에 따라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역시 지원체계는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경기북부권익옹호기관은 더 많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피해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또 찾았다. 지역사회 안에 흩어져 있는 자원과 그 자원을 운용하는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한곳으로 모으고 적절하게 피해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제 피해자였던 A씨는 지역사회에 당당한 한 사람이 되었다.

Ⅲ. 맺는 이야기

- 우리가 만나고 싶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40여년의 시간을 타인에 의해 힘들게 꾸려와야만 했던 A씨에게 경기북부권익옹호기관과 함께 한 3년은 다른 세상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3년 동안 짧게 짧게 지원하며 카운팅되는 사례의 숫자로 기관의 실적을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을 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이 있게 진행되고 해결된 이번 사례는 다른 많은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열쇠가 되고 있다.

이번 사례가 좋은 사례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피해장애인이 이제는 가정까지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사례를 대하는 기관의 태도일 것이다. 내담자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진짜 최선을 다함으로써 보여주었다. 최선이 결코 할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없을 것 같은 것도 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피해자A씨의 사례를 통해 노동착취 현장에서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이 다시 고민되었으며, 명의도용에 의한 바지사장 사건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체납세금 해결방안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을 지원하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수급비와 관련한 수급관리자의 문제나 타인에 의한 금전관리 등에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으며, 이후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면서 어떤 자원들을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법률지원체계 등이 제시되면서 유사한 사례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너무나 복잡해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내용들이 하나씩 고리를 풀면서 결국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권리옹호체계를 끊임없

이 고민하며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은 아직 고민 중이다. 다만 염전노예사건의 구청과 경찰서처럼 관료적이고 수동적인 곳이 아니었으면 한다. 장애인을 위해 뛰어다니는 곳이길 바란다. 앉아서 찾아오는 장애인의 이야기를 멍한 눈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난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들리면 빨리 쫓아 가보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역할의 최대치를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으면 한다.

이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들이 관료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 찾아온 장애인들에게 우리는 이걸 이래서 못하고, 저걸 저래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며 할 수 있는 것의 범위를 점점 작게작게 정해가고 있다. 카운팅되는 상담의 숫자와 실적을 고민하느라 주변의 다양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있다. 함께 대응하고 함께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실적이 다른 단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정보를 뽕뽕 싸매면서 단편적인 지원만을 제공한다. 이건 물론 비단 장애인권익옹호기관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진정 장애인의 옆에 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만나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잘 묶어내고, 언제나 단 한 명의 장애인에게도 진심인 기관을 만나고 싶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내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이라고 믿고 싶다.

지금도 피해자A씨는 알기 어려운 서류가 도착하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생기면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찾으신다. 가끔은 기관이 할 수 없는 부탁을 해오시기도 하지만 이곳은 A씨에게 의지가 되는 공간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문턱은 장애인에게 이렇게 낮아야 한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와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한 기관의 사례를 칭찬하기 위한 자리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랜 시간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었던 사례지원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이 더욱 많이 고민되는 자리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이 잘 만들어져나가길 기대해본다.

판 결 문

2018고단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7	장애인복지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일자불상경 상해 및 2016. 10. 일자불상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

터 2017. 5. 17.경까지 피해자 C(지적장애 2급)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게 일을 돕게 하였다.

1.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6. 봄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담벼락 앞에서, 담벼락에 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장애인이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할인제도에 의해 휴대전화 요금이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본인의 이름만 읽고 쓸 줄 알 뿐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12. 6. 1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mobile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J호',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무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4. 30.자 범행

1)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F' 휴대폰대리점에서, 기기변경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신규신청서'의 신청인란에 'C', 고객확인내용란에 'C', G 약관동의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기기변경과 관련된 'G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기기변경과 관련된 'G mobile 신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5. 6. 26.자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26.경 위 'F'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전화서비스를 변경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신청인란에 'C'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서비스 변경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7.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한 후 권한 없이 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L]', '분실 신고/해제'

페이지로 들어가 분실지역란의 '국내분실'에 체크하고, 분실유형란의 '휴대폰+usim분실'에 체크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분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K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작된 분실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기기록인 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2018. 4. 17. 증인신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4번)

1. 각 G mobile 신규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0, 22번), G mobile 서비스변경(증거목록 순번 21번), L 분실신고/해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은 인정한다.

나.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모친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그로 인한 요금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며, 다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요금제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꾸어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변경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데리고 대리점에 갔었고, 대리점에서도 본인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개통을 해 준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6. 봄경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비록 피해자 C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D아파트 담벼락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다리 부분을 걷어차인 적이 있는가

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고, 증인 M(2018. 4. 17. 증인신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인 위 증인 M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16. 8. 일자불상경 상해 및 2016. 10. 일자불상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2018. 6. 5.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4명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직접 본 사실은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다리 부위 등을 맞았다는 얘기를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 4명의 법정진술 및 증거목록 순번 27번, 36 내지 40번). 그러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여 진술한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 진술서류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진술자인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각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2016. 8.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 '거기(N을 의미한다) 밭에서 피해자가 일할 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가지고 얼굴이

빨갳게 된 적이 있어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 '얼굴 몇 대 맞은 거 있어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위 N에 있는 발에서 가슴이나 다리 또는 머리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거나 N에서 폭행당한 시점을 '작년, 추울 때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2016. 10.경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거기(////)에 있는 발을 의미한다)서 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찬 거 아니에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하고, '////)에서 맞은 것은 없어요.'라고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서도 '////)에서 맞은 것은 없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이 부분 2016. 8.경 및 2016. 10.경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확인된다.

3) 증인 ○○○(1950년생, 2018. 6. 5. 증인신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에 있는 발에 다녀온 피해자의 얼굴이 부은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가 발로 차었다면서 다리를 걸어서 보여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M(1958년생, 2018. 6. 5. 증인신문)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별정게 부어 손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기에 바지를 올려서 보니까 넓적다리가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증인 2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다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위 증인 2명 모두 피해자의 얼굴이 별정게 붓거나 다리에 멍이 든 경위(즉,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에 관해서는 모두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들어서 알게 된 것인데,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증인 2명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위 각 상해 경위에 관하여 들었다

고 진술한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는 점,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 8.경 및 2016. 10.경 각 상해의 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능력이나 지적능력이 제한적인 점, 피해자는 2016. 8. 31. 좌측 어금니에 근관치료(이른바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진료기록상 폭행에 대한 진술은 없었고, 상해로 인한 것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힌 점(2018. 9. 7. 0차과 사실조회회신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N에서 한 번 치과 진료를 받은 거 있어요. (왼쪽 얼굴을 가리키며) 이쪽만 부어났고요. 이쪽으로 얼굴 한쪽이 부어났고.'라고 진술한 점, 증인 ○○○(1950년생, 2018. 6. 5. 증인신문)도 '저녁에는 멀쩡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해자가 이를 안 닦아서 이가 다 썩어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2. 6. 19.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의 기기를 변경하였으며, 2015. 6. 26.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에 관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한 사실, 위 각 일자에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2012. 6. 19.자), 'G 신규신청서'(2014. 4. 30.자),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2015. 6. 26.자)가 각 작성되었으며, 그 때마다 피해자가 위 휴대폰대리점에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4명(2018. 6. 5. 증인신문)의 법정진술(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위 각 일자에 피해자 명의로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와 동행하였다거나 또는 그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위 문서 중 일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대리점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었다.', '2015. 6. 26.자 G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에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가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 또는 위임이 없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 수 있기는 하나 문맹이기 때문에 당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에 기재된 글자를 읽고 스스로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2)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나 위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작성되는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지적장애 2급으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으로서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의 작성이나 그 목적이 된 법률행위의 의미와 결과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불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매우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피고인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들어왔고,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한 인격적 폭력이 일상화 된 상황에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거나 또는 위 문서 중 일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더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의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은 약 13년 전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수년 동안 피고인 운영의 야채가게에서 숙식하면서 일을 해왔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G

mobile 신규신청서' 등 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고된 노동을 하게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거나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숙식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고용한 고용주로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폭행 부위도 매우 위험한 부위로 볼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저렴한 요금제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장애인인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각 문서 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요금은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특별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전자기특위작 및 동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인데, 역시 그로 인하여 특별히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7. 5. 17.경까지 피해자 C(지적장애 2급)의 가족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야채가게에서 숙식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게 일을 돕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8.월 일자불상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근처에 있는 밭에서, 일을 잘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뺨이 발갛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충남 예산에 있는 피고인이 농산물을 구매한 밭에서,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밭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제2항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2016. 8.경 상해 및 2016. 10.경 상해로 인한 각 장애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_____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12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판 결 선 고	2019. 3.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야채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4.부터 2017.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3. 8. 임금 차액 1,572,92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73,874,0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9,415,8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2018가단19941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가단19941 임금 등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9. 4. 26.
판 결 선 고	2019. 6.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289,9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2020타채391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 정

사 건 2020타채3912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 권 자

[Redacted]

위 채권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Redacted]

채 무 자

[Redacted]

제 3 채 무 자

[Redacted]

주 문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청구금액

금 134,085,371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941 임금 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보에 기초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사법보좌관





- 주의:
1.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추심한 채권 전액이 추심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됩니다. 그러나 추심신고 전까지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이미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참조).
 2. 추심신고서에는 사건번호,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를 적기 바랍니다(민사집행규칙 제162조 제1항 참조).
 3. 이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송달받은 날부터 1주 내에 이 법원에 사법보좌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법원조직법 제54조 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29조 참조).
 4.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고 이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참조).

2020머1125

의정부지방법원 조 정 조 서

사 건 2020머1125(2019나6080) 임금 등
(원심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9941)

원고, 피항소인 A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B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상임 조정위원 C 기 일 : 2020. 7. 28. 14:30

법 원 주 사 D 장 소 : 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실-
제2신관2층
공개 여부 : 공 개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출석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출석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조 정 조 항

1. 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금 1,000만 원은 2020. 9. 15.까지, 나머지 금 1,300만 원은 2020. 10. 15.부터 13개월 동안 매달 15일에 금 100만 원씩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나.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연속하여 어기거나 첫 회 1,000만 원 지급기일을 어기거나 통산 2회 어길 경우에는 갚아야 할 금액을 2,500만 원으로 올리고 위 금 2,500만 원에서 이 사건 조정 이후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의 나머지 금액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미지급한 날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9고단179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93 가. 준사기 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장애인복지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C(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농산물소매점인 E(이하 '이 사건 야채가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악의적으로 장

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0. 1.경 본건 가게 등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기화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킬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집을 사주거나 결혼을 시켜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장가도 보내주고, 집도 사 주고, 월급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5. 17.경까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157,390,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미약하여 경제관념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근로를 하게 하면서도 그 급여 1,688,0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7.경까지 근로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9,120,0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요지)(2018고단17 증인 F, 2018고단17 증인, 2018고단17 증인 목격자2, 2018고단 증인 목격자 3), 예금거래내역서, 판결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준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야채가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주로 농산물도매(//)를 위하여 피해자를 당진, //이나 //(피해자의 고향이다)으로 데리고 가 상품을 옮기는 등의 인부로 사용하다가 2014. 1.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야채가게로 데리고 올라와 위 가게 내부에서 숙식을 하게 한 사실(피고인 A는 2014. 2. 10.경 피해자가 2014. 1. 28. 이 사건 가게에서 가출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B도 2019년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로 올라와 살게 된 것은 4-5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시간이나 숫자를 제대로 세지 못할 정도로 지적장애가 중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야채가게 내부의 매우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매월 20만 원의 급여(2015. 9. 18. 200만 원, 2015. 10. 11.부터 2017. 5. 8.까지 매월 2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를 주거나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아니하고 무거운 짐을 배달시키거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숙식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2014. 1.경부터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제공한 근로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와 함께 //에서 방을 얻어 살다가//으로 갔다가 이 사건 야채가게로 올라왔으며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가를 보내 주고 월급을 준다고 할 때 피고인 B은 없었으며 B이 같은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야채가게로 올라온 시기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F 녹취서 7, 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 시간, 계절을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도 정확한 시기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2014. 1.경 이전부터 피고인 A의 준사기 범행 내지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월 20만 원의 월급을 주거나 아무런 급여도 주지 아니하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만 제공한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장애를 이유로 금전적 착취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2조 제4항, 형법 제30조(장애인 금전착취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판시 근로기간 중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지낸 기간도 있어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폐암 4기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도망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0.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야채가게에서 가게 정리, 물품 배달, 노점상에서 본건 가게의 물품 판매 등을 시키고 그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합계 78,270,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동액 상당의 금전적 착취를 하고, 악의적으로 장애인을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2017구합90377

서울 행정 법 원

제 2 부

제 목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

사 건 2017구합903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피 고

우리 재판부에서 심리중인 위 사건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을 권고합니다.

조 정 권 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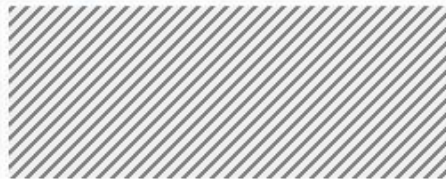
1. 피고가 2014.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37,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10년경부터 2017. 5. 17.까지 가 운영하는 야채 도소매 업체에서 노역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원고의 동생 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원고와 의 모친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 조정권고안과 같이 권고한다.

2019. 1. 25.

재판장 판사



2018나722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8나722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D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
2. 원고 승계참가인은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소취하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취하에 각 동의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7.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원고가 1997. 6. 23. 피고에게 10,900,000원을 연이율 13.8%에 의한 월원리금
296,807원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적으로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를 양수함에 따른 청구.

2019. 7. 3.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2018나4270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항소)

화해권고결정

사 건 2018나42704 양수금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원고승계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피고, 항소인 D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728,360원과 그 중 10,9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3. 6. 21. 주식회사 A으로부터 1997. 6. 23.자 청구취지 기재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함.

2019. 8. 2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당신의 관심! 한 통의 전화!
변화하는 장애인의 삶

1644-8295

장애인차별상담 및 학대신고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Gyeonggibukbu Advocacy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가평 · 고양 · 구리 · 남양주 · 동두천 · 양주 · 연천 · 의정부 · 파주 · 포천

11813)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140 삼산타워 301호
전화 031-851-1007 / 팩스 031-851-1008 / 메일 ggndrc@gmail.com
홈페이지 www.ggnaapd.or.kr